

제322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2월13일(목)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
 - 가. 고용노동부소관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 2
 - 가. 고용노동부소관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김원모 입법조사관입니다.
- 류재근 입법조사관입니다.
- 김형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세 분 모두 중요한 시기에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쌍용차 정리하고 무효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쌍용차 문제로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후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가 이번에 고법에서 쌍용차 정리하고 무효 판결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에 철도파업이 많은 국민의 관심사 속에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었습니

다.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잘 다루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통상임금 문제, 기타 근로시간 단축 문제, 그리고 전교조 문제, 그다음에 전국공무원노조 문제 등 노동부가, 노동 분야에서 우리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일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새 해로 넘어왔습니다. 더 노력해서 국민이 바라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대 전반기 국회 위원회 활동이 5월까지임을 감안해 볼 때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진심 어린 노력이 무척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노동정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오늘 회의의 취지를 잘 감안해서 회의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 진행발언.....

○**위원장 신계륜**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은수미 위원 예, 안전 상정과 관련한……

○위원장 신계륜 예.

○은수미 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안전이 업무보고에만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안전으로 저희 환노위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신계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정의와 진실의 실현을 위한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를 2월 임시국회 우선 안전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5월 쌍용차 청문회를 했었을 때 쟁점이 됐었던 거의 모든 부분이 사실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가 원천무효라는 것이 일정하게 드러났습니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네 가지 정도의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당시 작년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바와 같이 회사는 1심과 2심 재판부에 서로 다른 안전회계법인의 감사조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금감위에도 또 다른 감사조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됐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열람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 감사조서에 대해서 문서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니다. 동시에 금감원은 재판부가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다계상 즉 회계조작이 있었다라고 판결 내린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과다계상 측면은 있지만 이는 회계 관행상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전혀 반대의 답변을 저희 위원회에도 한 바가 있고요. 또한 재판과정에서 위 회신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재판부가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업무 방기,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사실은 회계조작의 확실한 혐의를 그리고 확실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좀 어려움을 낳았던 점이 있습니다. 아직 대법 판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조사 및 금감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당시 정부와 검·경이 공안대책회의를 통해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단정하고 부당한 정리해고에 반대하면서 헌법상의 파업권을 행사했던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고용부 역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라는 사회적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회사와 회계법인들에 의해 조작된 불법적 정리해고 때문에 파업을 벌였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당시 사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빨갱이, 불법파업 주동자, 해고자라는 낙인과 함께 2646명을 거리로 내몰았고 그 가족들 1만 명이 넘습니니다. 이분들을 지금까지 5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게 했으며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배상, 실제 어떠한 정신적·심리적 그리고 물질적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네 가지를 위해서라도, 이미 새누리당에서도 대선 전에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쌍용차 국정조사를 하겠다, 따라서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안전을 상정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은수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요지가 그렇습니니다. 쌍용차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이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가 의결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사일정의 추가입니다. 저는 은수미 위원의 발언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홍영표 간사, 김성태 간사는 좀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언제까지 협의를 하실지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계륜 회의 진행 중에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고용노동부소관

(10시24분)

○위원장 신계륜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관의 업무보고 자료가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제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필요하시면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태리에서 개최되는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최영기 상임위원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말씀에 앞서 우선 우리 부 직원의 업무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책임자가 저지른 비위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비위 차원을 넘어서 고용부와 고용노동행정 전반의 신뢰저하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제도 그리고 시스템 운영상의 허점을 철저하게 찾아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의 정보와 보안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착수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늦었지만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비상한 각오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경우에 일벌백계로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 고용노동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맞아 향후 5년간의 고용노동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구조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복지, 교육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노사정 일자리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 부처가 더 나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힘 없이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 매월 취업자가 4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개선세가 계속되었고, 상용직 근로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올해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12년 만에 최대인 70만 5000명 증가했고, 청년취업자도 7만 4000명이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한 해 이러한 긍정의 변화와 씨앗이 싹을 틔워 GDP 4만 불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핵심정책 과제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여성·중장년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으로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학교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고 학교 졸업 후 조기에 취업하여 일하면서 배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범부처 합동으로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직업교육과 훈련을 현장 중심,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획기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중소기업과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장기근속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뚜렷한 취업 증가세를 보였던 여성들이 더욱 맘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초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맞벌이 부부의 육아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유연근로를 확산하는 한편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의 문턱에서 있는 지금 소중한 인적자원인 중장년이 더 오래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60세 정년제 조기 정착과 재취업 지원에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이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월 남양주시에 설립한 제1호 고용복지종합센터를 표준모델로 하여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한 공간 통합에 머무르지 않고 서비스까지 연계·통합함으로써 어려움에 부딪힌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부끄러운 기초고용질서 위반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감독 강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과 산업 재해의 실질적인 감소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그동안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올해 5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이 산업재해 감소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넷째, 노사정 협력을 통해 신고용노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사회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고용 없는 성장, 생산성 저하,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등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고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효율적인 노동시장,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열린 노동시장, 다 함께 상생하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단기적·단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고 건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각각의 과제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과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두가 대승적 견지에서 조금씩 양보하려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국민들이 일을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끝까지 살펴보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입법과

예산 편성, 그리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정기국회 이후 새로 임명된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다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고용보험 관리정보 유출 사건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대책, 이따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습니다만…… 앓으십시오.

지난 11일 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영상보고로 하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는 세종시 청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가서 직접 하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장 신계륜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말씀이 있었고요. 다음은 그러면 심경우 기초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심경우 2014년도 고용노동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 현황과 전망, 중점 추진과제, 주요 현안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협약을 토대로 고용률 70% 로드맵과 또 후속대책 마련 추진에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8월부터 취업자 증가가 40만 명을 넘어서고 상용직 비중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보건복지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여성이나 청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에는 경제회복 조짐이 강화되면서 고용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입니다.

작년에는 지표상으로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철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가하고, 또 대화분위기가 경색된 상황입니다. 다만 상생협력하는 노사관계의 전환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 중점추진 과제입니다.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직업교육·훈련을 혁신하겠습니다. 전체 직무에 대한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직업교육·훈련을 현장 중심 과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단계부터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해서 조기 직업 체험을 지원하고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 그리고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합니다. 또 선취업 후학습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000개 기업 7000명 대상으로 일·학습 병행제를 실시하고 일반고 비진학 학생에게도 직업교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와 협의협업을 통해서 추진합니다.

5쪽입니다.

직업학교의 경우는 독일 등의 예를 참고해서 현장실무 중심 훈련으로 전환해 나가자 합니다. 아울러서 산업 수요에 맞는 훈련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한 훈련 수요의 공동조사 및 훈련 실시 그리고 업종별 인력개발협의체 육성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능력 중심 채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청년에 대해서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500명 정도 확대하고 또 선도 공공기관이 NCS 기반한 능력 중심 인사관리제도를 도입, 확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하던 고용환경개선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나가서 성공모형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계륜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6쪽,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고 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 30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 장기근속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영역을 계속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유망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또 K-Move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K-Move 센터 7개소 또 K-Move 스쿨, K-Move 멘토 등도 금년도에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꾸고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재취업 희망여성에 대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특히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리턴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의료나 관광문화 분야 등 전략직종 확대, 전문직종에 대한 훈련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로 확산입니다.

금년에는 시간선택제가 공공부문에서 가시화될 것이고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나 인건비 지원, 또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위해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추진계획도 상반기 안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대체인력뱅크나 대체인력지원금을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장년에 대해서는 먼저 정년 60세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나 모델을 보급하는 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50세 이상 장년에 대한 훈련 그리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 퇴·이직자나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또 내일배움카드제나 사업주훈련을 활용해서 50세 이상이 경력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취업지원입니다.

중장년 구직자 유형별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퇴직자 등 전문인

력 채용 시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도 3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와 연계한 일자리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서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 또 구직능력 제고도 지원해 나가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편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복지 확충입니다.

먼저 고용·복지종합센터를 금년도에 10개소 정도 설치하고 17년까지 70개 목표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개소된 남양주센터를 저희가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하고 이를 앞으로 신설될 신규 고용복지센터에 적용을 해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도 강화해 나갑니다.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시 부가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용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체불사건의 신속 해결을 위해서 권리구제 지원팀을 지방청에 구성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1차 위반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에는 즉시 사법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금년에는 한 2만 명 규모로 추진을 합니다. 15년까지 6만 50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심경우 실장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더 압축해서 요약보고하세요.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심경우 예, 알겠습니다.

고용형태별 고용공시제도도 시행하고 비정규직 고용 가이드라인도 상반기 중에 제정을 하겠습니다.

불법과건에 대해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확인 시에는 원청업체가 고용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고용안전망 구축입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예술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또 가입 누락자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해서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고용보험의 기능 강화입니다.

실직기간 중 적정 수준의 급여가 지원되도록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인상을 하고 부정수급 예방 또 재정 안정화 등도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재 걱정이 없는 안심일터 조성도 주요 과제입니다.

대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고위험 사업장 1만 개소를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재예방 노력에 따라서 효율을 차등화하는 산재예방요율제를 시행해서 재해를 효율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전수칙 분위기도 확산하고 특수형태근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가입률 제고도 추진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은 3.0, 민간은 2.7로 상향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장애인 전용훈련센터를 확보해서 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신고용노동시스템을 저희의 마지막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산성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효율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서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또 연장근로 등 장시간근로 감소를 추진하면서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서 고용보험제도 전반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하는 방식·문화를 혁신해서 다양한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열린 노동시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제택근로, 스마트워크,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확산하고 이를 위한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서 모두가 상생하는 공

정한 노동시장을 이루겠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면서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지원활동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러한 신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 노총이나 주요 산별연맹 등과의 노사정 대화 복원에 중점을 두고 또 지역단위의 대화에도 저희가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통해서 청년이나 비정규직 등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추진을 하고 노사협의회의 참여 범위도 확대를 해서 사업장 내에서의 실질적인 대화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9쪽과 20쪽은 저희 고용률 로드맵 추진과 일자리창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21쪽, 주요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센터의 정보 유출 등 비리사건 관련입니다.

사건 관련 주요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12년 7월에 권익위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저희 부에 요청한 바 있고 이어서 7월 24일 기업하기 좋은나라 운동본부가 신청을 대행한 사업장의 부당수령 여부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는 이에 대해서 지난해 3월 6일까지 조사결과를 통보를 했고요. 17개사에 대해서 4100만 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7월까지 경찰은 우리 부에 최 모 씨에 대한 수사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9월에서 10월에 거쳐서 고용보험전산망 로그기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로그기록을 제출한 바 있고 14년 2월 5일 경찰 수사결과가 공식 발표되고 우리 부에 바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동 사건 발생의 구조적 요인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망 개인정보 관리 측면입니다.

현재 기관별로 책임자가 지정이 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과 정보보안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에 한해서만 아이디를 발급한다든지 또 지정된 컴퓨터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 권한도 업무 단

위별로 부여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이번처럼 정보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직원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직윤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하면서 전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새로운 유형의 비위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를 저희가 충분히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고용지원금제도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 저희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건 발생 이후의 조치사항입니다.

2월 5일 날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해서 당사자를 직위해제하고 개인정보보호TF를 운영하면서 실태파악에도 지금 계속 각 지방을 통해서 고용정보원과 협조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2월 7일에는 정보보안과 관련한 전국 기관장 대책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논의하였고요. 2월 10일에는 일차적인 조치로서 과장급 이상 관리자의 정보활용 제한과 개인정보유출방지기술 적용을 이미 확대 조치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보호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도 이 TF와 연계해서 향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산망 보안 강화를 위해서 대량정보 조회 등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자동경보시스템을 2월 말까지 구축을 하였고, 지방관서의 보안USB 사용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 각 기관별로 정보보호 책임자와 담당자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 등 운영과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감사를 강화하고 또 내부신고 활성화 또 유출시에 처벌 강화를 통해 기강을 확실히 확립하겠습니다.

고용지원금제도 홍보를 통해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출장 상담 등도 더욱 강화를 하였고요. 제도개선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현안, 금융텔레마케터에 대한

고용불안 관련 사안입니다.

주요 경과를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사태 발생 후에 금융상품판매원 지원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도 카드 3사 텔레마케터 지원 방안에 대한 회의를 이어서 개최를 했고요. 향후에도 텔레마케터의 일자리가 안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서 필요 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공장의 안전관리 관련 내용입니다.

현대제철에서 그간 한 24건 정도의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월 7일에 현대차그룹에서 안전관리체계 전면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 또 자체 모니터링반을 구성해서 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6쪽, 통상임금 관련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사정위 임금·근로시간특위를 발족을 시켜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법정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령에 통상임금 정의와 산입범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입법 전까지는 노사가 소송보다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도록 저희 부가 마련한 지침을 토대로 지도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7쪽은 금년도 저희 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입법 추진계획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심경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 방법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

의시간도 7분으로 하기로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새누리당 서용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교 위원 서용교 위원입니다.

먼저 카드사 정보 유출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 정부에서조차 고용보험정보의 유출로 국민이 도대체 믿을 데가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유감을 발표하셨지만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좀, 경찰 쪽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에 고용노동부가 초기에 사건을 인지한 게 2012년 7월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인사조치라든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놔둡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범행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보고드린 대로 그 과정에서 권익위원회하고 또 수사기관에서 자료 요청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정보들을 제공해 왔고 단지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죽 돌이켜 보니까 적절한 조치들을 취했으면 추가적인 유출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제가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게, 물론 경찰청이 조사를 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권익위에 자료를 제공하고 경찰청 수사에 협조를 했지만.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부 내에 있는 감사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권익위라든지 경찰청하고의 협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두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1년 반 정도를 그냥 둔 것 아닙니까, 경찰청 수사가 최종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감사 기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대부분 뭉니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갖고 있는 고용보험 관련 전산 기록들에 대한 보안 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접근하는 데 대한 부분들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다른 부처와의 업무협조 과정 속에서 생기는, 어찌 보면 정보들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비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지금 각종 대책들을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감사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대안 중에 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다음, 제가 또 하나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게 보면 201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탁월 등급을 받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시스템 차원에서 평가를……

○서용교 위원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시스템만 이렇게 받고 운용하는 과정까지는 점검이 안되어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

○서용교 위원 범정부부처 TF 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논의가 좀 더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인풋(input)을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이 2명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2명 가지고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담당할 조직을 제가 보기에 구성을 시급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조직마저도 제가 보니까 고용노동부 본부에서만 해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자료를 갖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하고 교차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관리 책임자를 본부에만 둘 것이 아니라 각 센터의 적정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전문가들의,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으려고 그리고 또 한 고원에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 아주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자료에 대한 보안도 더 강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직원 한 분이 외부의 몇 분들과 공모해 가지고 수백 개 기업에 우리 고용보험상의 고용안정사업을, 어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지원 사업들이 수행되게끔 한 것이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서용교 위원 그런데 역으로 고용노동부의 우리 수많은 직원들은 그동안 뭐 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에는 각종 여러 가지 홍보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라는 보니까 이번에 주로 대상이 된 것들이 중소기업하고 그 밑의 영세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번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세기업들을 주된 타겟으로 해서 두 가지 것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SNS라든지 우리가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하고 또 하나는 지방에 가면 여러 가지 경제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과 협업을 해서 관내의 영세기업들에 우리 각종 지원금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또 이러한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향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김성태 1분씩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동안 행정 부서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자료 축적을 죽 하는 그런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 이 단계에서 고용노동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다른 부서들이나 일부 부서 또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정부 3.0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서용교 위원** 이런 단계에서 보면 지금 2.0도 못 쫓아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런 부분, 3.0까지 여지에 두면서 지금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균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고용부가 관리하는 보험 데이터들은 사실은 피보험자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나 지원하는 담당 인력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이라든가 유출을 막아야 되는 보안의 측면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 두 개를 좀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서용교 위원** 아무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들, 꼼꼼한 계획들을 세워서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장관께서 대안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주 통렬한 자기 점검 그다음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를 하고 지금 계속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서용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이 돼 가는데요, 아직도 우리 고용노동부는 갈 길을 못 찾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정부부처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죽 봤더니 이번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텔레마케터들의 고용위기로 바로 연결될 것 이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됐던 문제인데……

금융위원회가 TM 영업활동을 전면적으로 중

단시켰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노동부에다 대고 ‘이것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금융위가 주도를 했는데 해당 부처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은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 TMR(텔레마케터)들의 고용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뒤늦게 협의를 시작을 한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인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마힌드라 측과 1억 불 투자 협의를 했다, 예전에 쌍용차 청문회 때 다 나왔던 얘기지요.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쌍용차가 자체 잉여금 또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은 것을 다시 투자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문제는 마힌드라가 신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자체 대출을 해서 투자하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이 예전에 나왔던 얘기를 또 그냥 ‘1억 불’ 이렇게 써 먹기는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또 물어봤더니 ‘산업부가 주도를 했는데 자료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통령이 스위스의 직업훈련시설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훈련시설을 방문했는데 산업부가 주도했고 자료가 없어요. ‘자료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인데 쉽지 않다’ 이게 노동부의 답변입니다.

노동부가 정부 내에서의 역할이 뭐니까? 일자리, 고용정책 주도하는 것도 기재부에서 다 주도하고 노동부는 실무 따까리 일만 하고 있다 제가 그랬어요.

정부부처 내에서 노동부가 노동부로서의 역할이 없다 이런 겁니다. 완전히 찬밥에다가 외톨이, 외톨이. 다른 부처하고 협의도 안 되고 다른 부처들은 자기 사업대로 다 진행하고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노동부가 뒤치다꺼리하는 데입니까? 문제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서용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정부 3.0이 안 되는 이유가 2.0도 못 하면서 3.0을 하려고 하니까 3.0이 안 되는 겁니다, 2.0도 못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그동안에 고용률 70% 작년에 발표할 때도 저희들이 주도해서 범부처적으로 했고 그 이후의 후속조치들도 여러 TF를 만들 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단지 이제 새 정부에서는 부처 간에 칸막이 허

물기 그리고 협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김경협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죽 열거했던 문제들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협업을 강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김경협 위원** 왜 협업이 안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왜 노동부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문제는 계속 생긴 다음에 왜 이게 안 되느냐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무시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김경협 위원** 실제로 제가 지금 사례로 들은 것들이 나타난 사례들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은 저희가 맡은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노동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텔레마케터 부분도 금융사의 정보 유출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주관 기관에서 대책들을 하고 대책들을 할 때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된 파급 효과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2월 5일 날 범부처 TF도 저희 주관으로 소집을 해서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참 이후에, 사건 다 터진 다음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한참 뒤가 아닙니다, 위원님. 보시면……

○**김경협 위원** 한참 뒤가 아니라…… 저기 TM 영업활동 중단시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월 24일이었어요. 처음으로 협의를 시작한 게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물론 더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해제 조치가 2월 4일 날 됐는데요, 2월 5일 날 협의를 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전부터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왜 해당 부처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못 받았습시다마는 저희들은……

○**김경협 위원** ‘모른다, 자료가 없다’, 다 이겁니다. 대통령 인도 방문, 스위스 직업훈련시설 방문 다 마찬가지로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닙니다. 노사 현안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식도 다 그렇습니다. 철도파업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는 사용자 입장에서 당연히 대응을 하겠지요.

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이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마힌드라 관련해서도 고용부하고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김경협 위원** 국토부 뒤치다꺼리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부분은 대통령의 국가 순방 일정상 일정과 관련된 것이지 저희 역할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협 위원** 마힌드라를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쌍용차 문제가 얘기가 될 것이고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부에서 뭔가 준비를 하거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직업훈련시설을 방문하는데 노동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상관이 있는데요……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노동부는 무시를 당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찬밥이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맡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또 저희 나름대로 관련해서 역할들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협 위원** 맡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전교조 문제도 그렇고 전공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노조 아니다 통보해 놓고 설립신고서 반려해 놓고 어떻게 대화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대화를 하시겠다고요? 노사정 대화 가능하겠습니까?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노동부가 노동부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주어진 여건들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원론적인 얘기 계속 반복하시는 것 안 하셔도 되고요. 원론적인 얘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 더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래요, 1분 더 주세요.

○**김경협 위원** 장관님이 자꾸 내 시간 다 까먹고 계시네.
원론적인 얘기 계속 되풀이하면서 시간만 까먹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김경협 위원** 문제는 지금 통상임금 갈등, 임금체계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다 노사정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다 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식의 노동부의 역할 때문에 노사정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완전히 식물위원회가 돼 있잖아요? 노사정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정부부처 내에서 역할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눈치만 보고 정치력은 없고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고 이라고 있으니까 노사정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예다가 지금 옆친 데 덮친 식으로 내부기강 문제까지 이렇게 터지고…… 노동부 공무원들 어떻게 자긍심 가지고 신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장관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정부부처에 대해서 역할이나 위상을…… 명확히 노동부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난국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해법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2월 11일에 2014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도 대통령께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업무계획에 따라서 오늘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업무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거고

또 어떤 것들은 경쟁이 아니라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가 주도하느냐 그런 시각에서 보시기보다는 범부처적으로 협업해서 나간다는 것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김경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훈 위원** 장관님, 저도 오늘 정보유출 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사를 해 왔는데 질문드리기 전에요, 제가 지금 하나 입수한 정보가 너무 황당하고 그리고 사소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전혀 사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먼저 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7일 대통령께서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이 재발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런데요, 지난 12월 18일 오산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송년만찬회에 고용노동부도 지칭장이, 인근 지역의 지칭장이 기업인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산업현장의 산재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저 공사는 우리 것도 아닌데 여기 와서 죽었다. 죽어도 꼭 여기에 와서 죽어, 다른 곳에서 죽지 않고 꼭 여기 와서 죽어’. 이게 작년 6월 3일에 발생한 평택-수서 간 고속철도 현장에서 근로자 7명이 폭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암벽이 무너진 사건이고, 이것으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건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장관님께서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확인해서 엄중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종훈 위원** 노동부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 12월 23일에 저희 방에서는 파약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저희 비서관이 노동 문제와 관련된 동향을 신문스크랩을 해서 제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털사이트에 가서 '고용노동부' 칩니다. 12월 23일에 '고용노동부' 치니까 이게 나와 있었어요.

대변인실, 뭐하는 겁니까? 대변인실, 이 뉴스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이종훈 위원** 대변인실이 이것도 파악을 못 하고…… 봤는데 같은 식구니까 감싸준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도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다마는 장관님이나 저나 스크랩해서 못 본 거 같습니다.

○**이종훈 위원** 중부청장 나왔어요, 중부청장?

도대체 노동부 전체가 모릅니까? 한 비서관이 바로 그날 당일로 알 수 있는 거를 노동부 전체가 몰라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이……

○**이종훈 위원** 이 지청장이요, 여수지청장에서 이리로 오신 분인데, 있을 때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예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이 거의 온라인 스크랩까지 다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파악하시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입니다. 노동부 내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그 부의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문책하실 것인지 그 부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저희가……

○**이종훈 위원** 잠깐,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종훈 위원** 그거 보고해 주시고, 세 번째로 여수에서 산재사고가 있는 다음에 이리로 와서 반성은 하지 않고 면피하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만 생각하는 기본 마인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고 제가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거는 아마 지역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언론까지는 다 스크랩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이종훈 위원** 포털사이트에서 우리 방에서 그냥 치니까 바로 나왔다니까 그러네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알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두 번째로 정보유출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업무보고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조회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보안 USB 사용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마인드가 중요하니까 교육시키겠다' 이게 다예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다른 시스템상에 여러 가지 보완장치들을 지금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산재사건이 터지면 노동부에서 '정말 잘못했다' 그러고 또 터집니다. 제가 그래서 산재사건, 지난 국정감사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인을 모르는 것 같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심지어 국회의원인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종길** 예.

○**이종훈 위원** 저거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에 몇 가지…… 제가 오늘 오후까지 해서 몇 가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저희 방에서 파악한 거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정보 보안시스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변화가 DRM이 변화했어요. 즉 다운 못 받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종훈 위원** 그게 전 문서를 다운 못 받게…… 예전에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다운받을 수 있었다가 전 문서를 다운 못 받게 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다운이 자료가 아니라 화면이라든지 파일은 보고서 마련을 위한……

○**이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다운을 못 받게 하는 것만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이번 사건이 터지니까 바뀐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원래 개인들은 다운을 못 받게 되어 있고 기업들은 열려 있었는데 기업까지 이번에 DRM을 건 겁니다.

○**이종훈 위원** 항목이 1800개 중에 58개만 못 받게 되어 있다. 지금은 모두 못 받게 되어 있

는 거로 바뀐 거예요, 장관님.

그런데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운은, 파일째 다운 안 받고 출력을 해 나갈 때 소용이 없어요. 그런 방식은 하나도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저기 보세요. 출력인증보안시스템 저거 중소기업 수준입니다, 대기업 수준이 아니에요. ID카드를 대야만 출력할 수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출력 로그시스템……

조금만……

○위원장대리 김성태 1분 더 주세요.

○이종훈 위원 출력 로그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출력자가 다 파일로도 남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리고 이미지 보안시스템, 워터마크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출력하면 밑에 이렇게 출력자가 누구인지 나오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로그기록이 다 남게 됩니다.

○이종훈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출력해서 돌아다닐 때 여기 밑에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민간기업은 워터마크라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누가 출력했는지.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이종훈 위원 제가 오후에 밝히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딱 떼어 내고, 이거 싹 잘라 내고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출력은 사실 일선 업무자들이……

○이종훈 위원 아니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오후에 다시 그거를……

중요한 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하세요.

○이종훈 위원 지금 민간기업 시스템의…… 민간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하는 이 정도가…… 이게 고용노동부 책임이 아니에요. 이 일이 발생한 다음에 고용노동부가 저런 원인 분석을 해 냈어야 됐고 중요한 게 저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왼쪽 수준. 민간의 중소기업 수준에서 보안시스

템이 되고 있는 데가 청와대하고 서울시청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부처 전부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면 장관께서는 근본적으로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첫째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이거를 계기로 국무회의 가서 안행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치한 것들은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긴급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외부 전문가 도움도 받고 해서 하겠습니다만, 출력 관련해서는 업무상 출력이 되는데 그 부분도 모니터링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관께서는 이종훈 의원실에 적극적인 보안체계에 관한 협조를 구하세요, 많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음은 민주당 은수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수미 위원 민주당 은수미입니다.

잠깐 우선 부탁을 드릴…… 부탁이 아니지요, 이거는.

어제—2월 12일이지요—저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 6명이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 급히 방문을 해서 다섯 시간의 협의를 거쳐서 노동자들의 문제는 일정하게 해소를 했습니다.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2월 13일자로 즉각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지원 및 숙소 문제에 대한 긴급구조는 오늘 아침까지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 등의 합의를 했습니다만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의정부지청장께서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술홍행비자를 통해서 초청을 받아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로감독 권한이 없었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의정부지청장에게 근로감독 실시하시고 책임자 처벌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점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예술홍행비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추정컨대—이거는 기관의 초청이라고 합니다—추정컨대 4000에서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거 확실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 어떠한 노동 실태인지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본 것은 동물에게도 그 정도면 학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약 조치를 안 하시면 고용부도 아프리카예술박물관과, 전 관장이지요? 관장 등등 경영진과 더불어 인간학대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서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고소 고발자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의정부지청장께서 답변을 하셨던 거로 나와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이 먼저 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아마 고소 고발이 접수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은수미 위원** 두 번째로,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고용부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전 장관께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고 쌍용차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부적절하고 고용부가 해야 될 일은, 심지어는 국회의원들 300명이 해야 될 일은 쌍용차를 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 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고용부 전체에서 신차를 몇 대를 구입을 했고 그중에 쌍용차를 얼마나 구입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이것은 전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을 훈계하면서 ‘하겠노라’ 한 약속 이행사항입니다. 최소한 그거는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이행이 됐는지, 신차를 몇 대 구입했고, 그중에 쌍용차 몇 대 구입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마 고용부장관 방하남 장관께서도 설마 지금 판결까지 나왔는데 ‘쌍용차 사주는 것이 국회와 고용부의 대책이다’라는 말씀은 안 하실 거 같아서 그거는 여쭙지 않겠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손배가압류가 쌍용차가 47억입니다. 그중에 정부가 손배가압류를 한 것도 있습니다. 2013

년 한해 전체 노동계의 손배가압류액이 약 983억 원,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대충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최저임금이 5210원인 나라에서 파업 한 번 했다고, 그것도 정당한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했다고 이런 손배가압류를 맞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측의 손배가압류 처분이 과다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최근에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더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쌍용차에 대한 정부의 손배가압류 요구안은 철회해 줄 것을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하십시오. 건의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만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은수미 위원** 정부가 요구한 것을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은수미 위원** 정부가 요구한 액수가 있습니다. 못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쌍용차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25일 경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타진을 했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어쨌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러한 입장 표명을 해 왔습니다.

(김성태 간사,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런 손배가압류 문제는 갈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원천적인 원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손배가압류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을 요구합니다. 그거는 대답을 안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특히 정부의 손배가압류 요구에 대한 고용부가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을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요구합니다. 국회가 계속되는 동안 제가 계속 이것을, 고용부 입장이 뭔지 밝혀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쌍용차 측에서……

○**은수미 위원** 아니,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하

지 마시고요. 고용부가 그런 요구를 할 계획이 '없다'라든가 '하겠다' 명확한 대답을 해 달라는 겁니다. 논의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MBC 파업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쌍용차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쌍용차 노동자들 및 그 가족들이 5년째 폭도로 낙인찍히는 빌미를 주고도 지금…… 그분들은 스물네 분이 돌아가시고, 사경을 헤매는 분들도 계시고, 생존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 고용부는 5년째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공식적인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이라고 예단을 하고 그로 인해서 사상자가 났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피해 그것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일하는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고용부장관으로서 지금 이 사안이 진행되는 동안에 생기게 되는 근로자, 국민들의 어떤 가슴 아픈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은 아직 최종적인 판결이 안 나온, 법적 절차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은수미 위원 전 장관께서는 쌍용자동차를 사주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하고 이번 고용부장관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결을……

조금만 더……

판결을 더 보자라는 대답으로 책임을 회피하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책임 회피가 아니라 이번에……

○은수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BC 파업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시면 조금……

○은수미 위원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MBC 파업은 고용부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미 판결이 다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요. 더불어 쌍용차 파업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불법이라고 예단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가……

○은수미 위원 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용부장관 해임결의안을 저 역시 촉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전혀 예단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수미 위원 예단을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닙니다. MBC의……

○은수미 위원 잠깐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말할 기회도 좀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제가 마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MBC 파업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저는 말을 못 하게 하시면 어떻게……

○은수미 위원 아니, 충분히 시간을 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말씀하십시오.

○은수미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에 얘기를 해야 될 얘기인데 예단을 하셔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파업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자꾸 그렇게 고용노동부의 책임으로 하시기보다는……

지금 이 사안이 법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법원이……

○위원장대리 홍영표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나온 판결이 기존에 확립된 법리하고도 상당히 다른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다음 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사회적으로 형평성 있는 접근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수미 위원 사회적으로 형평성 있습니까? 그러면 노동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동안 그런 판단을 내린 정부와 고용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
다.

○은수미 위원 무엇이 형평성입니까? 노동자들
이 짓밟히면 고용부도 같이 밟혀야지요!

○위원장대리 홍영표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저는 이럴 때 사회적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 촉구할 겁니다. 고용부의 책임 있는
사과, 일하는 시민들을 폭도로 내몰고 빨갱이로
낙인찍은 것에 대한 고용부의 책임 있는 사과까
지 포함해서 사과, 손배, 쌍용차 샀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
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는 항상 법
과 원칙하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려고 그랬지 말
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14년 첫 상임위원회, 노동부 직
원들 고생도 많으신데 최근 비리사건이 나서, 열
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 안 됐으면 하
는 바람도 함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출신이기 때문에 참담하기도 한데
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장관님께
서 국민 앞에 엄중하게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까 말씀드렸습니
다 마는……

○이완영 위원 간단히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거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완영 위원 사과를 하셔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국민 앞에 송구스
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
록 아주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을,
비리가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
는 것 같아요. 지금 수리가 될 경우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형사상 추정금도 나오는데, 지금 행
정벌로써 수리금의 최대 5배까지 부과금을 때려
서 정말 이제 돈을 불법적으로 받으면 패가망신

하고 집안 살림 다 날리고, 이런 것을 제가 확인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직도 바뀐 제도를 모르
고 있어요. 제가 우선 그것을 우리 전 부처 공무
원한테 알려야 된다, 그것을 먼저 알려주세요.

산하기관도 지금 기관장님 다 나와 계시는데,
사실 과거에는 우리 산하기관에도 이런 수위사건
들이 있었는데, 산하기관에는 이런 행정벌이 적
용 안 되겠지요? 알고 계세요, 행정벌 5배까지
부과하는 것?

감사관 있어요? 감사과장 있어요?

우리 산하기관들은 이렇게 행정벌 이것은 적용
이 안 되지요? 공무원만 적용되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감사담당관 이덕희 예.

○이완영 위원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 산하기
관도 항상 공무원에 준해서 하나까 차체에 산하
기관까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행부 등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아시다시피 청렴도에서 항상 우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
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장관님, 지금 노정관계 한번 물
어봅시다. 어느 때보다 노정관계가, 간단히……
어떠세요, 좀 불편한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여건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최근에 한국노총 위원장 취임으
로 민노총과 양 노총 간에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어렵다, 이런 얘
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부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
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해가 서로
다르고 또 서로 접근해서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넘지 못할 장애요인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난번 철도파업 때 개별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노동 탄압하는 정부다라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국회 정론관에 가서 박근혜정부는
절대 노동을 탄압하는 정부가 아니고 우리가 제2

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마당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다, 이렇게 제가 기자회견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 정상화 대책 관련해서도 제가 기재부 쪽에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항상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동참하면서 공기업 정상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야만 성공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나 종사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봐서는 성공을 못 할 것이다, 제가 이런 주문을 드려서 발표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계는 지극히 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노동부장관님이 나서셔서 청와대하고 기재부하고 해서 함께 정상화를 해 나가도록 동참을 시키는 역할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협의체라든지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 역할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완영 위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 노총이나 민노총도 그렇고 공기업 노조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바라는 대로 갈 수가 있다, 이것을 명쾌히 인식을 하시고, 제가 그런 역할을 주문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한테 한번 여쭙 보시다.

제가 작년에 위원장님 나와 계실 때, 여러 가지 통상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것을 노사정위원회 주도로 이끌어 가는데, 작년보다도 더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협약해졌습니다.

해서 제가 여야, 국회가 참여하는 5자 회의를 가동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한번 답변을 간략히 해 보십시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 최영기** 여러 기회에 이런저런 명칭으로 노사정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를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의 선후관계, 우선순위로 보면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논의가 우선되어야 국회가 주도하는 그런 노사정 협의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작년, 벌써 6개월 정도 됐는데, 노력도 안 했더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노사정위원회가 먼저 가동이 되어서 국회하고 하겠다라고 인식하니까 진도가 없는 거예요. 국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회가 들어오니 노동계에 같이 협의를 하면 진도가 있을 것 이더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계를 끌어들이고, 국회를 함께 동참시키겠어요? 방법을 바꿔서 실질적인 논의가, 그래야 정부도…… 노사정이 됩니까? 정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고 옆에서 현안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란 말이지요. 그 역할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거기에다가 위원장님의 그런 리더십도 있는데 그것을 너무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지금이라도 방법을 바꿔서라도 주도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 최영기** 노사정위원회의 그동안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노동계 불참이 저희 위원회의 노력 부족 문제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않았던 노정관계의 악화에서 비롯된 겁니다. 또 마침 노총의 새 지도부 선출과 관련된 이런 특별한 사정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2월 말에 새 지도부가 정식으로 취임하면 3월 중에 사회적 대화의 어떤 정상화를 위한 저희 위원회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고 정부의 어떤 각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한 통상임금 제도개선 문제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부문 개혁 관련해서도 노동계 스스로도 사회적 대화 테이블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노사관계의 원만한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고용관계 여러 가지 이슈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대화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노동계에도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노정 악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정 악화를 푸는 것도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국노총 한번 방문하셨지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 최영기 예, 방문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행보를 통해서 노정 악화를 완화해 주는 데도 역할을 하면서 현안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상임위원 최영기 위원님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요. 밤 10시경에 울산 연암공단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 재학생—그러니까 현장실습생이지요—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보고받았습니다.

○장하나 위원 뭐라고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모님들께서 아직 이 학생의 장례 절차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더 황당한데요.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 그러니까 회사 측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설명도 하지 않고 있고 만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시신 인도마저도 부모들이 공장에 가서 직접 해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임을 노동부에 묻고 싶은데, 이분들이 장례를 못 치르는 것은, 회사야 도망갈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책임 있는 울산지청에서 이 부모들에게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회사와 보상을 논할 수가 있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사건 경위는 어떻고, 이런 설명을 하나도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장례식장에 성인도 못 된 자녀의 시신을 두고 그냥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사건 경위를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즉시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이런 비상식적인 일까지 상임위원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오늘 아니면 빠르면 내일까지라도 제발 장례라도 치를 수 있도록 지청에서 나가서 할 도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장 감독도 병행해서, 위법사항들이 나오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하나 위원 아직 현장조사까지는 안 되어 있나요? 사고 파악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하고 계신 중인가요? 결과를 빨리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이날 울산에서만 두 분이 같은 이유로 산재사고 당하지요. 기록적인 폭설이 있었고 약한 샌드위치 패널이 무너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사가 무너져서 압사를 하신 겁니다.

두 건이 있었는데, 저는 이 이전에 울산지역에 이런 기록적 폭설, 초유의 폭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공단에 안전조치하도록 관련된 우리 지청에서 사전에 안전예방조치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또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여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미 근로감독관하고 안전공단이 서로 정보를 공유를 했고 직원이 현장에 출동을 즉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붕괴원인 조사하고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조치들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된 것은 현장실습생, 그러니까 고인의 유족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러니까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사후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것을 오늘 당장이라도 조속히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현장실습생이 사실 공장에서 일을 배운다는 명

목으로 가 있지만, 그리고 노동자성도 이미 인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 학생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210원 받으면서 라인에서 다른 노동자들과 유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가장 제일 위험한 상황에 이런 노동 취약한 계층들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 4만 5000명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사고 진상조사 내용을 받아 보고 싶은 게 야간근로를 혼자 한 게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혼자 이러한 사고를 당한 점에 대해서도 첫째 궁금하고요.

또 둘째는 야간근로 부분은 현장실습생이 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 학생도, 학교 측과 이 회사가 그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 측은 '이 실습생이 야간근로를 원했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원했든지 안 원했든지 사건의 본질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부하고 좀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먼저 현장실습,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들을 해서 개선대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돼 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단지 저희들은 현장실습보다는…… 보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일·학습 병행제도로 좀 전환을 했으면 합니다. 일·학습 병행에서는 참여하는 기업들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역량이 되는 곳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선택해서 기업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도 더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계속 정말 어린 학생들이 한 둘이 이렇게 죽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을 좀 발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특히 이 학생들이 현장에서 사실 이중, 삼중의 약자적 위치에서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정말 일을 배우는, 일을 배우면서 또 노동의 대가도 받는 이런 상황이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말씀드린 일·학습 병행이 지금까지 그런 현장실습의 여러 가지 좀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현장에서 일을 배우는 데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일단 지금 4만 5000명 현장실습생 전원에 대한 이런 조사가 사실상 너무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사고가 있었던 현장들이라든가 공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홍영표 1분만 더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취약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존에 사고가 있었던 데를 오히려 또 가고 확실히 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현장실습생들이 유독 많이 있는 공단들이 있을 겁니다, 밀집된 지역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들을 좀 선별을 해서 가지고 확실히 이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단 전체적인…… 특히나 학생들한테 철저한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시고요. 그러한 조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저희 의원실과 좀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올 상반기 안에 어느 정도 노동부에서 현장실습생 문제에 대해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고 학생들도 정말 행복한 이런 노동자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마련했으면 하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것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일단 근로기준 위반에 대해서 엄정조치하고 사업장 감독 등을 함과 동시에 이제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하고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리고 지금 장례도 못 치르

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대환 학생의 부모께도, 장관님과 또 직접 관련이 있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칭에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당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업무적인 부분과 또 이렇게 일이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한 위로의 표시를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朱永順 委員** 주영순 위원입니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사태로 국민적 불안과 걱정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고용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또 발생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해당 공무원 한 사람의 개인비리로 치부하기에는 국가기관의 개인 정보보호 시스템이나 노동부 내부감사 시스템, 노무법인 감독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용부 내부감사 등을 통해 정보 관리에 대한 내부감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5년 동안 고용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나 의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개인정보와 기업정보를 갖고 있는 고용부가 이체서야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또 아까 인사말에서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해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그랬고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산재 은폐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던 모 노무법인—서울청 산하지요—문제를 지적하면서 노무법인에 대한 철저한 감독·점검을 몇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감독하고 관리를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작년에 저희들이 공인노무사의 어떤……

○**朱永順 委員** 형식적으로 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가 법 개정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특히 고용부 출신 노무사가 내부소통을 한 혐의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피의자인 최 모 과장은 노무법인 2개와 3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개 노무법인이 지난 2011년과 12년에 설립되어 불법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했는데 이들 노무법인에 대해서 고용부가 단 한 번도 점검이나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국감에서도 노무법인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 지적을 했음에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됩니다.

저는 상임위를 하면서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의 얼굴을 천천히 쳐다봅니다. 이게 장관 책임이 아닙니다. 차관도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만약에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이 자리에 버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큰일을 당했는데도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감에 공무원들이 앉아서 다른 생각이나 하고 먼 산만 쳐다본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항상 열심히 잘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봤을 때…… 제가 작년에 이걸 세 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노무법인에 문제가 많이 있다, 반드시 이것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2011년, 2012년에 설립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조사나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기관 단체장들이나 공무원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 뭐 국정감사 할 필요도 없고 ‘그 당시만 어떻게 잘 그냥 피해가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지적을 했으면 ‘아, 저기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잘

좀 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고용부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워낙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홍보 강화는 말할 것도 없지만 비슷비슷한 성격의 지원금을 통합해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전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제도를 준비를 하고, 단순화하고 또 그러면서도…… 사실 보증을 가지고,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모럴해저드라든지 사중손실 이런 것들도 동시에 걱정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두루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제도를 좀 준비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발로 찾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센터들이 있습니다 마는 몰려오는 우리 국민들 서비스하기에도 벅찬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단체하고 협업 그리고 또 요새는 IT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SNS를 통해서 해당 영세기업들의 경우에는 제도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인노무사 관련해서는 사실은 작년에 이와 다른, 산재보험 관련해서 불편부당한 그런 편취라든지 유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지시를 해서 공인노무사들의 행동강령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의 자정노력을 제가 지시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 법안 개정을 지금 아주 엄격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무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고용노동부하고 여러 가지 채널로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공인노무사회가 첫째로 자체 영업 윤리강령들을 좀 철저히 세워 주기를 바라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는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라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더라도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정부에서도 아주 철

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감독들을 해서 그런 부정의 소지들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朱永順 委員 그러니까 모든 비리는 지금 노무법인을 통해서…… 여기 계신 대다수 공무원들은 성실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과 유착관계로 인해서, 노무법인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고요.

또 아까 인사말에 앞으로 재발할 경우는 일벌백계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큰 사건이, 카드사건이 터지고 고용노동부 사건이 터졌는데 분위기 쇄신을 해서라도, 장관께서는 아주 강한 처벌은 아니더라도 어떤 경각심을 갖고 반성할 계기를 주어 가지고 인사문제도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하고 해야지 이대로 두고…… 그러면 이 사건 날 때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하겠다 하면 공무원들이 정신 차리겠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朱永順 委員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朱永順 委員 이것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의법조치할 것들이 있으면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이것은 분명히 차관의 관리책임이 큰 겁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신 차리고들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마무리해 주십시오.

○朱永順 委員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다음은 오전질의 마지막 순서로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장관님, 제가 중간에 질의를 안하고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지금 환경노동위원회를 세 번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번만큼 환노위 활동을 하면서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습

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의혹이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를 지적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 때 서로 소통이 되고, 고용노동부가 자유권을 가지고 정치권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손을 잡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동 문제를 한번 짚어 보면서 우리 정치권도 반성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몫을 해 내고, 정부도 정책전환을 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노동기본권을 확대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입니다. 박근혜정부 시작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확대 없이 과연 질 좋은 일자리, 고용노동률 70%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노동기본권 확대방안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있는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노동기본권은 헌법소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도 ‘노동기본권’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이 이렇게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했다는 것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7년차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선진국은 고용률 증대와 튼튼한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이렇게 애쓰고 있는 반면에 거꾸로 우리나라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조마저 부정하는 암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반시대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이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사회의 굼직굼직한 노동현안 문제를 얼마나

편파적이고 편향적으로 해석해 왔는지 법원의 판결들만 봐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PPT 자료 좀 보여 주시지요. 잘 안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17일에 MBC노동조합 파업은 정당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요구한 공정방송 요구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MBC 파업에 대한 그동안의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작년 한국일보의 파업을 보면 당시 사측은 편집국 폐쇄라는 초유의 행태를 보였는데 노조는 즉각 ‘직장폐쇄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 이 편집국 폐쇄가 절대 직장폐쇄가 아니라고 뒷집만 지고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법원은 직장폐쇄가 맞다고 했으며 직장폐쇄를 즉각 해제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서 법원은 노조 아님 통보의 가처분 신청에서 노조인 전교조의 손을 들어 주었고 고용노동부는 항소까지 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최근 쌍용자동차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해고자 전원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고한 희생과 사회적 갈등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 판결의 내용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가를 진심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철도노조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노위가 맞부딪힐 정도로 내달리고 있었던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마지막 중재를 하기 위해서 중재를 위한 환노위를 열었을 때 말하자면 국토부장관이나 철도공사 사장과는 달리 중재에 애를 써야 될 고용노동부장관마저 거기 와서 적극적으로 ‘불법’이라는 말씀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에서 네 명 이외에는 전원 기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 그리고 전공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설립 반려 사건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해석 유지로 불거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고용노동부도 곤란하게

하고, 우리 정치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죽인 노동기본권을 법원이 다시 살려놓으라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법원의 정상적인 재판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고용노동부의 그동안의 노동정책의 기조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노동 문제를 정치권과 정부가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손을 맞잡고 해결할 수 있을지 앞길이 암담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목표에 근접하려면 집권 2년 차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은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장관께서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률 70%라는 목표가 과연 노조를 깨고,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그 위에 쌓을 수 있는 타인지 한 번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해 보면서 고용부가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해서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어떤 정부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것은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원칙하에서 정부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법과 원칙이나 가지고 사안마다 다른 민감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1심 혹은 2심, 또 상고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법과 원칙에 대한 일종의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과 이해를 형성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취약계층과 또 저임금·저소득·중소기업·비노조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그다음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위해서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고 업무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지켜봐 주시고요. 단지 중앙 단위에서의 노사관계 조금 더 냉각기가, 얼음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고용부장관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제가 계속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지금 한명숙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법과 원칙을 편파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그것은 대법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그러면 그간에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지침이나 예규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래서 지침에서는 바로……

○**위원장대리 홍영표**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전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동계나 이렇게 지적되어 왔었지만 이게 맞다고 고집을 하다가, 고집을 부렸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가? 그러다 이번에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김경협 위원** 책임을 져야지.

○**위원장대리 홍영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도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자고 하니까 대법 판결을 기다려 보자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그것은 또 고용노동부가 대법 판결나기 전에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그런 것의 결과

가 결국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라든가 이런 것
과 배치되기 때문에 계속 비판받았던 것 아닙니
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라고 좀 받아들이
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지적……

○**위원장대리 홍영표**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그것을
국민 앞에 사과도 해야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그러면서 불리하면 법과
원칙을 내놓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렇지 않습니다, 위
원님.

○**위원장대리 홍영표** 아무튼 오전질의는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말씀하신 취지들
을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
고 잠시 정회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새누리당의 최봉홍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3페이지 중점 추진과제
아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노동부에서 일을 하는 게 이 보고서를 죽 볼 때
구체적인 방안은 다 나와 있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향유
하고 있다 못 하다 하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를 만족스럽게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다 달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의 노동구조에서 볼 때는 불
로소득이나 중간착취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특히 용역이나 파견이나 하도급, 비정규
직,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으로서 신분은 보장받
았다 하지만 그 무기계약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

지 문제들, 그다음 화물이나 퀵서비스 뭐 로지스
틱스나 해서 그 기업의 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근로자의 손실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없습니까,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는 없는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확대
하고 관련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룹들이 많이 있습
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이
IMF 이후에 우리 산업의 생산 시스템으로 자리
를 잡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
으로 고용의 질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도 추구하고 동시에 그런
과정에서 어쨌건 그 안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으면 면밀히 살펴봐
나가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답변 그것만
듣겠습니다.

실제 고용률이 금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
나 오늘 언론 보도나 그런 것으로 봐 가지고는
질은 거기에 상응하지 못할 만큼 많이 나빠졌다
고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고용을 하되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이 되
는 식으로 좀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노력하겠
습니다.

○**최봉홍 위원** 아울러서 요번에, 여기에도 현안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도
문제, 실제 노동부가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14개 기관 해 가지고 노동
부가 종합순위 9위 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보고받았
습니다.

○**최봉홍 위원** 9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보통 공무원직에 처음 들어올
때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 노동법이 있고 그에
맞춰서 윤리강령이니 행동강령 전부 다 안 있습
니까? 그런데 저는 볼 때 이게 선서를 한 그 내
용대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
긴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회에서 안고 있는 그 총체
적인 비리는 그것을 지금 청와대가 혼자 앉아 가
지고 하기에 어렵고 1개 부처에서도 하기가 어

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콰이아 같은 데 노동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근 한 달 넘게 파업이 되는 것도 내용 면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역시 거기에 노동전문가들이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 본연의 업무를 못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노무사 관리나 이런 것 할 때도 제 생각 같아 가지고는 부정수급 근절하듯이 삼진아웃제를 만들든지,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런 사항이 생기면 서로 악어 악어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가 되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자세가 기본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지금 작은 사업장 같은 데 근로감독 잘 안 나옵니다. 노조가 되어 있는 데는 주로 나갑니다만 노조가 안 된 데는 한 달에 1번, 1년에 한두 번 그런 정도인데 인력이 모자란다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실 것과, 그다음 또 하나는요 노사 문제가 생기면 꼭 국회가 개입을 해 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여태까지 국회가 개입해 가지고 노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예는 별로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옛날 YH나 동일이나 쌍용이나 죽나왔지만도 결국은 노동자들이 정치인들의 희생양이 되는 그리고 자기 직장 다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다시 재취업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왔는데 그런 현장에 노동부가 먼저 앞장서 나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노동부는 없습니다.

지금 철도노조 파업할 때 뒤에 ITF라는 기구가 들어와 가지고 석 달 전부터 같이 공작을 했는데 노동부 정보 전혀 모르고 안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시다.

○최봉홍 위원 외국 대사관에 그 사람들 요구가 먼저 갔습니다. 각 나라에 있는 우리 한국대사관에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이 거기 먼저 들어갔단 말입니다, 국내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노사분규가 생기면 노동부에서 지방청별로 저는 생각할 때 TF팀을 만드십시오.

지금 조용하다고 하고 있는 철도나 교원이나 물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들이 전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노사 간에 서로 양보 협력해 가지고 정상화시킴으로 해서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쌍용차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안 났습니다. 제가 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상고한다 합니다. 1심에서는 회사가 이겼고 2심에서는 노동자가 이겼습니다. 3심이 나와 봐야 결론이 납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 달려 들고 하면 실체가 이렇다 하고 기다려 주는 것도 예의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 결국 국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동부 일을 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쉽습니다.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홍영표 예.

○최봉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나올 때는 노동부의 지청장님들이나 감독관들이 좀 책임제로 하시든지 해 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뒹굴면서 양보선을 찾아내고 협상선을 만들어 내는 것이 노사 간에 노동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노사 간에는 원칙이 없다 아닙니까? 서로 합의하면 온갖 줄을 다 걸 수 있는 것이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통상임금 문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노사 자치를 인정하는 제도를 조금 예를 들어서 내놨는데 앞으로 노사 자율로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노사 자치를 인정하는 것 없거든요. 모든 것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노동법 자체도 노사 자치를 인정하는 식으로 전면적인 개정을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토론회도 한 번 했고, 그게 이제 금방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규제 위주의 노동법보다는 노사 간의 자치에 의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약자유의 원칙이 집행되는 그런 법으로 전향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정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올해 특별히 전반기에 여러 가지 갈등 관련된 제도라든지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현장에는 특별히 제가 지시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아마 통상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관련해서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노사 자치라든지 계약자유의 원칙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논의해서 사회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그런 방향도 연구가 가능하겠습니니다.

○**최봉홍 위원** 연구과정에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한정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민주당 한정에입니다.

1월 20일 날 아침 7시 46분경에 충북 진천에서 있었던, CJ제일제당에서 실습하던 만 16세 김동준 군이 투신자살한 것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전에도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요.

노동부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왜 안 지켜집니까, 현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이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겠어요? 불 좀 꺼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김동준 군이 부서 배치 후에 일을 했던 근태기록을 보면……

잘 안 보이는데요, 부서 배치하고 난 뒤에 32일 중에 초과근무, 2013년 12월 9일 날 부서 배치를 받았습니니다. 부서 배치받고 32일 중에서 23일을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23일을 초과근무 했고, 그중에 2일은 주말근무도 했고요.

그리고 투신자살하기 바로 전 주의 경우에는, 조출이라고 그러지요, 조기출근. 아침 6시 한 45

분까지 출근을 목요일 하루 빼고 월, 화, 수, 금, 토 조출을 했고요, 자살을 하기 하루 전날에는 조기출근을 해서, 휴일근무하는 날이지요. 토요일인데 그날은 전체근무를 하고 초과근무까지 했습니다.

노동부가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있나요?

저는 이번에 최상철 씨 건, 노동부 공무원들이 감사관도 그렇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정작 국고 지원되는 것을 빼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도 안 되고 감사관도 제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2013년 7월 달에 인지했다고, 좋습니다. 국가권익위에서 연락이 늦게 와서 인지한 것이 7월인데 7월부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분은 경찰로부터 특정인을 지정해서 수사 협조 의뢰를 받은 그다음 달, 그게 9월이지요. 10월 달에 노무법인을 설립까지 합니다. 그건 무슨 자신이 있었겠어요, 이 최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나는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제 업무를 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자란다고 차라리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있는 사람들은 댄 짓을 하고 있고 정작 해야 되는 저 업무 저런 것들은, 저게 사람이 모자라서 못 찾는 겁니까?

열린 채용 한다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서 마이스터고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을 실습…… 실습의 이름으로 하지만 32일 중에 23일을 초과근로를 하고, 이것은 근로감독관이 한번 나가서서 근무일지 출퇴근시간 한번만 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근로감독은 하러 가면 뭘 보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한정애 위원** 다음 장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이게 김동준 군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스터고라고 해도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겨우겨우 8시에 일어나 가지고 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 아직 아이 아니에요? 애 아닙니까,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아침 6시 45분까지 현장에 들어올 것’이라고 하면 도대체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서 나가야 됩

니까? 조찬 간담회 가끔씩 하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7시 반까지 모이는 것도. '6시 45분까지 현장에 들어와라'라고 하면 애는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야근시키고 주말근무시키고…… 어떻게 배겨날 수가 있어요.

도대체 현장실습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생활에서 직장생활에, 바로 현장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뭔가 완충을, 적응할 수 있는 적응기를 주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7시간이고 본인이 원하면 1시간 정도는, 8시간 근무 정도는 할 수 있게……

지금 이 내용이 진천 CJ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울산에서는 12시간 주야 맞교대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죽은 학생?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한정애 위원 뭘 하시는 겁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일단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정애 위원 사람이 이렇게 새벽 7시 45분에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찬물을 끼얹고 거기에서 뛰어내릴 정도면 그게…… 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저희 부처하고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현장실습의 문제점들을 하기 위해서 내실화 방안을 했습니다마는……

○한정애 위원 저는 그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노동부가 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앞으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수시 감독 계획을 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늘상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노동부 열심히 하시겠다고 늘상 말씀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통상임금이건 근로시간면제조건 기업에서 울고 뭔가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관들을 총동원해서 그 업무는 하시면서, 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직장에서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 사람들의 일은 많이 안 찾아봐 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앞으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실습 제

도 자체가 어쨌건 처음부터 제도 설계라든지 또 실제로 실습하는 곳에 대한 정부의 어떤 지도 감독 선별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현장실습형보다는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 제도로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정애 위원 병행 제도로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장을 가는 경우에 선배나 선임들의 구타문화, 직장문화 자체를 바꾸기 위한 노동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이라서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과 관련되어서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따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동의합니다.

○한정애 위원 다른 업무를 하듯이 이런 전근대적인 업무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한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통감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영표 장관님,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더 소상하게 알았는데, 지금 말씀 듣고 질의 들으시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쨌건 이런 사항들이 다시 반복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다시 한번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장실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바람직하기는 현장에서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일만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제도가 잘못 운영되어서 그런지 일만 하고 실제로 학습은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

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들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장관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며칠 지나면 다 없어질 겁니다. 고등학생들의 현장실습 문제는 우리 환노위에서도 몇 차례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장관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현장실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국감 때라든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답변하고 그냥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이 이렇게 자살까지 해야 되는 극단적인 노동환경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하고, 제도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대리 홍영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런 말씀은 지금 정부, 전임 장관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했거든요. 현장실습의 문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장기간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처우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과거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어린 학생이 이렇게 자살에 이르게 된 환경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이 문제는 한번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라면, 요즘에 대통령께서 ‘비정상적 정상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취약계층, 특별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기초 고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올해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현장……

○위원장대리 홍영표 아니, 이런 문제는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부 전체가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다 자식들 키우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업무보고나 이런 거 믿지를 않아요. 지적하면 아마 내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현장실습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 실행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위원님들 첫 번째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요, 아까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대한 안건 상정을 간사 간에 협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두 번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도 사과하고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위원장대리 홍영표 예, 아무튼 서용교 위원님 안 계시니까 김경협 위원 두 번째 질의……

아니, 먼저 하셨나요?

민주당의 은수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제가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서 마저 좀……

저는 이번 자살 사건에 대해서 고용부가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실태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8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제정 취지는 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따르면—이것은 고용부의 고시입니다—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습시간을 1일 7시간으로 제한하며 1일 1시간만 연장 한도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및 휴일에는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지켜졌을까요? 이유가 뭐냐 하면 죽음의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제21조—이게 죽음의 조항입니다—이게 노동부의 고시였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특례라는 게 있어서 ‘현장실습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명시해서 현장실습계약과 동시에 기업은 해당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협약서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실습생이 근로자로 바뀌고 협약서상 실습시간 보호조항은 사라집니다.

고 김 군의 근태기록을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동 조항으로 인해서 졸업도 하지 않은 고등학생에 대해서 하루 11시간의 장시간 노동 착취가 가능하도록 고용부가 본인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그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저는 고용부가 명백하게 고 김 군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방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태보고에서 장관께서는 이 고시규정을 조속히 삭제하고 ‘일·학습 병행’ 이런 말 하시기 전에 이 죽음의 조항 제21조 반드시 삭제하시고요. 졸업생을 배출한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모든 취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하시고 그리고 이 죽음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 외의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십시오. 이것 반드시 보고사항에 첨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학습 병행, 이분들 하셨습니다. 근로계약 체결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살 방조하겠다…… 잘못 들으면, 이게 오해를 하면 장관님의 발언은 자살을 방조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노조 파괴가 지난 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으로 정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국민의 상당수가 지지하는 것을 보자 아예 노조의 싹을 자르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지난 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당시 발언에서 정부가 부채가 많다고 주장한 주요 5대 기관의 2011년, 2012년 경영평가 점수를 쭉 봤습니다. 경영 효율, 주요 사업, 노사 관리, 인건비 인상률 등 모든 항목에서 이 대부분의 공공 공기업이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만 경영이다, 부채가 높다고 말 바꾸기를 하신 거지요. 2011년,

12년까지는 경영성적이 굉장히 좋다고 했으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인건비 인상률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상했다 이렇게 평가서를 공식적으로 해 놓고도 우선 말 바꾸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 과도한 복리후생 문제를 따지셨습니다. 그래서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한 3000억 원을 직원들에게 준 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12개 기관의 직원 수가 7만 1397명입니다. 1인당 연 84만 원, 월 7만 원 수준 꼴로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한 겁니다.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으로 해먹은 돈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인천공항공사 부채가 1조 2000억 원이고요. 현대컨소시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들어간 기업의 이익은 2조 40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게 2조 4000억의 이익을 내게 해 주고 정부는 1조 2000억의 부채를 떠안은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수조 원, 수백억씩 먹어댄 것은 그대로 놔두고 12개 기관 직원 7만 1397명에게 1인당 연 84만 원 준 것을 과도한 복리후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법 위반도 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으로 인해 필요 시 지급되도록 단협에서 그것도 관련 규정 및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경조금을 보류코자 하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모 기업의 차장께서 이런 메일을 보냈던군요.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과 연계하여 현행 경조금 지급기준에 대한 검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한바 신청하신 경조금의 지급을 당분간 보류코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한테 아주 알뜰하게 뜯어먹고 대신 도대체 그 돈, 그 많은 부채, 그것을 진 책임자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처벌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다고 칩시다. 경조사비 지원하는 것 많다고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단협 개정—이게 단협에 근거한 사항입니다—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에는 의결이 필요합니다, 법상. 이 의결 없이 이렇게 메일 보내서 지

연하겠단, 불법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해서 유가족 문제로 자녀 우선채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295개 공공기관 중 이러한 단협 또는 인사관리규정에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총 48개입니다. 16%에 불과해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이 16%에 불과한 기관에서 채용현황이 19명이더라고요. 이유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고용세습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아니, 노동자들이 삼성처럼 경영세습을 합니까, 뭘 합니까? 얼마나 돈을 받아먹습니까, 노동자들이? 일하고 헌신하다 죽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 유가족들 생계 좀 보장해 주자, 그것도 형평성이 떨어진단,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고용세습이라는 딱지를 붙여 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유는, 저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정부의 아주 꼼꼼한 공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부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부장관 입장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공기업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기관마다 사정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복지체계라든지 임금체계도 다 다르고 또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강압이 아니고 노사가, 분명하게 정부에서도 밝혔습니다. 노사가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우리 공기업 그리고 공기업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이익 되는 방향으로 우리 공기업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방만 경영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공기업 개선을 원활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아까 말씀하신 CJ제일제당 직원 투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청주지청에서 확인을 했고 또 경찰과 협조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어쨌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강압근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강압근무 외에 또 뭐 다른 사안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사업장 점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제가……

○이완영 위원 다음 넘어갑시다.

○은수미 위원 하나만……

○이완영 위원 아니, 넘어갑시다!

○은수미 위원 다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공기업에 대한 과도한 복지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만약에 이게 단협으로 이미 노사 간에 합의가 돼서 시행되는 사항일 경우에 회사가 강압적으로 단협을 무시하고 그 복지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위원장대리 홍영표 아니,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회사가 잘못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기존의 단협을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위원장대리 홍영표 그러니까 단협으로 이미 되어 있는데 아직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있을 경우에는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위법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노사가……

○위원장대리 홍영표 그러니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해석을 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노사가 좀 자율적으로……

○위원장대리 홍영표 아니, 그러니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맡겨 두시고요. 자율적으로 합의가 안 될 때 단협으로 이미 노사가

합의해서 그런 어떤 복지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잘 아시겠습니까만 위원님, 기존의 단협에 있는 것들은 노사가 협의를 통해서 변경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내용이 준수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원하는 것들 거기까지 가기 전에 계획을 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사가 협의를 해서? 그것의 계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좀 개선해 달라, 이것이 국민의 요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그것은 요망사항이시고 법은 법대로 지키시라 이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어쨌건……

○**위원장대리 홍영표** 법을 지키세요. 그것을 자율이 아니고 강압에 의하거나 협박해서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협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수미 위원** 참고로 이것 한국전력기술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여러 가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상황들을 좀……

○**위원장대리 홍영표**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재라든지 조정 또 노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저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법과 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 고용노동부는 항상 노사의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그 말 별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께 공정한 사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 못 한 것 중의 하나가 고용보험기금

에서 지원되는 각종 고용장려금 그리고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영세중소기업에 얼마나 알릴 것이냐 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간사, 김경협 위원과 사회교대)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방노동청장 할 때는 정말 다양한 제도를, 우리 노동부 공무원도 하기 어려운 제도예요. 그것을 쉽게 좀 풀어 가지고 꼭 많이 쓰일 수 있는 것, 특히 이런 것은 기숙사도 만들 수 있다, 통근버스도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심지어 책받침도 만들어 보고, 사업주들한테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전해 주는 겁니다. ‘노동부에 오면 사업주 조지는 부서가 아니라 이제는 돈을 타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노동청에 대한 기업주의 이미지가 바뀌는 겁니다. 기업주가 가서는 안 될 곳 세 군데 얘기를 해요. 그중에 노동청 하나 들어갑니다. ‘이제는 고용보험으로 기업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들여다보시고 자주 오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사업주는 사업주, 노동계는 노동계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완영 위원** 지방관서에 지시를 해서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받는데 30%가 다른 데 날아가면 중소기업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있을 수…… 정말 갑갑해서.

제가 며칠 전에 제조업 인력난 토론회한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축사도 보내 주셨는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작년부터 줄곧 이런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 해소, 부처 간 칸막이 없애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알선을 잘해야 된다 귀가 따갑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바로 어제 제도 지역에서 중소기업 갔다 왔습니다. 대구하

고 아주 붙어 있는 지역임에도 사람을 못 찾는다, 그러면 대도시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못 찾는다, 사람을.

결론은 이렇게 찾아도 없으면 대안이 뭐냐, 우선 내국인으로 하여금 일자리 원하는 사람을 저울릉도 있는 사람까지도 일하기를 원한다면 알선을 해 주고, 그래도 못 찾는다면 방법이 뭐 있느냐, 저는 외국인 근로자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작년 국정감사 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하면서 숙식비 제공으로 인해서 내국인 근로자보다 사업주들의 부담이 더 심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숙식비 제공관을 전 중소기업주들이 아예 제공 안 한다는 것을 통일을 하도록 지도·홍보해 줘라, 하셨어요? 조치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심지어 그 제공관을 없애야 된다는 말을 저한테 하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왜 그것을 서식에 넣어 가지고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주들이 거기에 체크해 가지고 숙식비 제공하는 부담을 더 안느냐, 서식도 바뀌야 된다는 얘기까지 그날 나왔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논의 결과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사실 외국인력 확대를 저희들은 산업계 얘기들을 많이 듣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양면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올해 실제로 섬유패션업종의 경우를 보면 저희에게 들어온 쿼터, 그러니까 1월에 공급쿼터, 정부에서 한 것보다 들어온 신청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완영 위원 장관님, 그런데 제가 섬유·유통·제조업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그날은 왜 그게 주제가 됐느냐 하면 노사가 원하는 것이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체감하는 인력난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완영 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자는데 노동계도 함께 해 가지고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얻었고, 또한 제가 토론하면서 100% 끝까지 앓아 있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만큼 절실한 사람들이

앓아 있습니다.

저는 제조업, 다른 것은 저는 지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말로. 제조업의 중소기업체는 전부 원하청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돌아가면 완성 있게 안 돌아가거든요.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사에서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 가지고 6개월에 이내 알선을 못 받으면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기업단위에서 몇 % 이상은 안 된다 이게 있다는 것이지요. 제도 자체 쿼터를 정하는, 국가 차원에서 정하는 기준도 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되, 저는 기업단위에서 제한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6개월 동안 내국인 구해 달라고 고용센터에 했는데 못 구해 줬으면 외국인 바로 자격을 주고 바로 공급해 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 제조업 CEO들 모시고 지금 관련된 통상임금, 근로시간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을 설명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개월 대기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한번 기업 현장에 맞게 개편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완영 위원 외국인 고용 한도 결정하는 것도 지금 인력 부족률, 러프한 국가 인력 부족률로 하는데 미충원율, 예를 들면 한 가지 지표 부족률 말고 미충원율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도 좀 쿼터량 정할 때 다시 한번 기준을 보시고, 저는 가장 절실한 것은 기업단위라는 것이지요. 기업단위에서 그것도 6개월도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것도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정도 센터에서 못 구해주면 외국인 바로 보내 줘야 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겁니다.

장관님, 제 이 말씀에 공감이 안 되면 한나절만 센터 현장근무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현장근무를 다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력이 있는데 그것을 공급 못 해 줘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 못 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제2의 경제성장이 되겠는가, 이것을 절실하게 생각하시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 한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조업 부문만 해도 사실은 그 내에서도 뿌리산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쿼터를 20%를 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시스템 차원에서 유연하게 공급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또 기업 수준에 내려가면 사실 좀 어려운 기업일수록 더 많이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무한정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속 기업이 수요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게 답이나, 그것은 또 사실 정부 고용정책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이완영 위원** 잠깐만요, 1분만 주세요. 아까도 2분 썼어요.

○**위원장대리 김경협** 1분했어요, 1분.

○**이완영 위원** 1분 더 썼다고.

○**위원장대리 김경협** 1분만 했어요.

○**이완영 위원** 아니에요. 1분만 더 줘 보세요.

○**은수미 위원** 그러면서 왜 저한테 소리를.....

○**이완영 위원** 두 번 썼어요, 1분짜리들.

○**위원장대리 김경협** 다음에 하시지요, 다음에.

○**이완영 위원** 아니아니, 지금 끝낼게요. 마무리 할게요. 저는 3차 안 할 테니까.

○**위원장대리 김경협** 그러면 그냥 하세요.

1분 추가로 합시다, 1분 추가로다 해서. 1분만 딱 추가로 해서 끝내기로 하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

○**이완영 위원** 아니, 은수미 위원이 1분짜리를 두 번 쓰셨다고요.

○**은수미 위원** 아니요, 저도 마이크 꺼 놓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협** 한 번 썼습니다.

○**이완영 위원**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경협** 꺼 놓고 했어요, 꺼 놓고.

○**이완영 위원** 두 번 했다니까?

○**위원장대리 김경협** 아니, 한 번 했어요.

○**은수미 위원** 마이크 꺼 놓고 했어요.

○**이완영 위원** 확인해 볼까?

○**은수미 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완영 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따가.

내가 거짓말하면서 얘기를 하나. 보좌관이, 두 번 썼으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

○**은수미 위원** 한 번밖에 안 썼습니다.

○**이완영 위원** 내가 다음 타자라서 세고 있었어요.

○**은수미 위원** 마이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협** 마이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했어요.

○**은수미 위원** 마이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협** 마이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했어요.

○**은수미 위원** 아니요, 두 번이나.

○**은수미 위원** 안 그랬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따 확인해 보세요.

자, 장관님 지금 말씀이 또 국가적으로 인력정책을 감안해서 무한정 들어오게 해서 이 말씀이 제가 지금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노동계에서도 외국인 들어오면 내국인 일자리 잠식한다, 안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노동부 인력정책의 첫째 임무 아닙니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기업이 사람이 없어 가지고 헤맨다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니, 정부에서도 어쨌든 완전.....

○**이완영 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기업단위에서만큼은 요청해 가지고 내국인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물론 이제 기업단위까지.....

○**이완영 위원** 그때그때 해 주자라는 취지로 저는 제도 개선을 해 줘라 이 말씀인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아는데요.

○**이완영 위원** 또 국가인력정책에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닙니다, 위원님.

○**이완영 위원** 완전 공급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풀린다니까요, 현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스매치가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 내국인이 실업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실업률이 안 되잖아요. 내국인 달라고 해도 못 주잖아요. 내국인이면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외국인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경협** 이완영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부족한 인력을 전부 외국인으로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노동시장의 균형도 생각하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울릉도에서도 내국인 다 알선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면 외국인 하라는 취지를 왜 기업단위에서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협** 아까 은수미 위원님 추가질의 할 때는 막 뭐라고 그러시더니 본인이 잘 안 지키시는군요.

○**이완영 위원** 대행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경협**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완영 위원**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경협**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장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회의 중에 줄이건 있으시더라도 서로 질의할 때 다른 대화를 막 옆에서 하시는 것은 전반적으로 안 하시면 어떨까, 너무 당연한 요청인데 드려 보고요.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제가 매번 질의할 때마다 질문을 드려 봐요. 같은 질문 너무 많이 드렸지만 현재도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있습니다. 한 겨울을 거기서 보내셨고요. 안타깝게도 설날도 가족들과 있지 못하고 옥천IC 부근에 광고탑이 있는데요, 제가 몇 번을 둘러봤는데 오늘 이 순간에도 철탑 위에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유성기업 얘기고요. 거기 아산공장, 영동공장 두 지회가 있는데 양 지회장님이 올라가신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동향보고는 받고 계신지 일단 묻고 싶네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받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가 일일노동동향들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 124일째입니다. 그중에 또 훌륭한 지회장님이라는 분은 고공농성이 두 번째인데 참 이렇게 법과 원칙 자주 강조를 하시는데요, 법과 원칙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도 이렇게 참 한 인간이 안 처하면 좋을 만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지, 고공농성이 너무 익숙해지셨지요. 뒤에 많은 우리 고용노동부 직원분들도 이제는, 저마저도 무뎠는데.

그 위에서 특히 대소변이라든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신변 처리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거기서 석 달, 넉 달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일견에는 '귀족노조'라는 표현도, 단어도 있어서 제가 움찔움찔 놀랄 때가 있는데요. 어디를 봐서 귀족이라는 것이고, 어디 봐서 노조 해가지고 정말 팔자 펴는 건지,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협 위원,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제 시각을 가지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행히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님이 아주 꾸준히 또 진정성 있는 이런 중재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유성기업의 유시영 대표이사가 단체교섭에 나오기로 했고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에 두 분 중의 한 분, 아까 말씀드린 아산지회의 훌륭한 지회장님이 일시적으로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와서 교섭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그러한 노고에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고받으신 중에 그 내용이 저는..... 노동부의 입장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동부 수사결과는 기소의견으로 여러 가지, 제2노조를 만드는 데 회사가 심지어 행사개최 비용을 대는 등등 부당 지배·개입을 했고 그래서 노조 설립에 현격한 문제가 있다고 노동부 수사결과는 말해 주고 있고요. 그것이 검찰에 가서 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재판부에서 이것을 따져 묻지도 못한 채 오히려 지금 노동부 수사결과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의 어떤 혐의가 너무 명백한 유시영이라는 사측 대표가 더 활개를 치는 셈이 된거거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나 또 고용노동부도 어떤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대로라면 노동부 수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님은 이러한, 작년·재작년 거의 환노위에서 창조컨설팅이라는 일개 노무법인이 무슨 상징처럼, 대명사처럼 잘못된 노동탄압·노무관리의 상징이 되고 심종두라는 노무사는 자격을 잃었지만 결국 거기에 공모했던 사용자들은 다 면죄부를 단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아니면 이 수사결과, 검찰의 이러한 처분 내용, 불기소처분을 대량 한 것에 대해서 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짧게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질문을 다 하고, 질의 후에 입장 좀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한 2분여 남은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장하나 위원** 검찰의 이런 처분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 상이한 판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지금 천안지청장님이 주제를 해서 이와 같은 노사의 대화가 다시 재개될 걸로 되어 있는데, 첫째 지금 2011년부터 계속 문제가 심각하고요. 지난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들이 우울증이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고위험군 정신질환이 너무 상당수 위험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본부에서도 근로감독, 계속 과장님이라든지 또는 본부인사가 어떤 대화 과정에 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가지고 이번에는 좀 중지부,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천안지청에 본부의 직접적인 조력을 좀 구하는데 그것 어떠실까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어쨌건 오래 끌기는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대화 주선을 했었고 또 정성을 들여서, 좀 시간이 걸렸습시다만 어쨌건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안 해결들을 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고요.

말씀하신 검찰과의 기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장하나 위원** 장관님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제가 하나 정도 더 얘기를 드리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말씀하십시오.

○**장하나 위원** 마무리해서, 시간이 끝난 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검찰이 노동사건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저도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렇게 고용노동부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되는 이런 예들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이런 노동 사안들을 이후에 우리가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고요. 심지어 노동자들이 이제 특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오늘 오전에 가졌거든요. 검찰의 이러한 수사결과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러세요, 1분 더 주세요.

○**장하나 위원** 노동부의 수사결과와 검찰의 의견이 너무 상이한 게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어느 한 편을 완전히 신뢰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검찰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특검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도 오늘 오전에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수노조 상황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 좀 문제가 있는 차별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하고, 지금 정부 쪽에서도 어떤 입장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국회와의 어떤 TF 구성을 통해서 제도보완책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부터 논의를 좀 해 봤으면 해서 일단은 저희 의원실과 환노위 위원님들과 고용노동부가 복수노조제도개선TF를 좀 꾸려 봤으면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안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들과 더불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사법부 판단이라든지, 최근에 보시면 검찰이라든지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중립적이고 사법부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사법부 나름대로 자기들의 원칙을 가지고 할 텐데 저희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현장의 조사를 할 때, 어쨌건 현장에 관련해서 불법한 것들이 있으면 더 노력들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혐의가 더 입증을 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여러 사건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면 고용노동부가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사법부인 검찰의 판단은 입증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입법과 사법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어쨌건 저희는 어떤 사안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현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신 복수노조 관련해서 제도…… 어쨌건 현장의 갈등이라는 것이 사람의 문제, 노사 간의 어떤 갈등도 있습니다마는 또 제도가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개선되고 현장에 맞게 조정되어야 된다는 점의 취지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우리 노동부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범죄다’, 그런데 검찰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사측이 더 활개를 치고 두 노조를 차별을 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 현장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노동부가 검찰 수사결과, 검찰의 처분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말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행정명령을 현장에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차별을 시정하는 데 적극적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홍 위원 장관님, 지방에 노사민정 기구가 다 구성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구성되어 있는데……

○최봉홍 위원 정부에도 노사정위원회가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현실적으로 잘 돌아가는 데도 있고 안 돌아가는 데도 있고……

○최봉홍 위원 그런데 현재 현안 문제, 쌍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노동조합이나 회사가 공동으로 해서 노사정위원회에 조정의 역할을 신

청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협의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정부 측에다가 이것 둘이 현안 가지고 안 되니까 국회에 가기보다도 노사가 같이 참여하고 정부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노사정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최봉홍 위원 바람직한데 그것을 이때까지 그렇게 신청한 예가 있습니까?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거의 없습니다.

○최봉홍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장관님 앉으셔서 가지고…… ‘우리 조합원 동지가 옥천 철탑에서 데모를 한다’, 민주당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위원은 정당에 의해 가지고, 남의 조합원입니까? 옥천 철탑에 올라가는 것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가 같이 다루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국회가 앉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의 현장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도 노동부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해 주시고 그런 발언이 나오든지 하면 정부로서의 본분을 지켜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장 사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사 문제가……

옛날부터 한번 들어 봅시다. 6·29 난 후에 노사 문제가 크게 일어났는데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전부 다 실업자 안 됐습니까? 살아 있는 노동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쌍용의 24명 죽고 나머지 정리해고됐다는 이런 사람들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 가지고 쌍용이 아니고는, 그것도 강압에 의해서 받지 않고는 직장을 잃을 지경 다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충동질을 해 가지고 정치제물로 이용할 때는 끝까지, 그 사람의 생계를 죽을 때까지 보장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부가 나서 가지고 과감하게 노사정이 언제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이스터고의 실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이요, 졸업점수 잘 못 받으

면 취업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2학년·3학년 올라가면, 직장에 들어가면, 우선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가 점수를 따기 위해 가지고 그 회사의 지시를 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습을 할 때는 일용시간 딱 지킵니다만 실습이 끝나고 취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 실지 그대로 시킵니다. 시키는데, 그런 경우에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번에 CJ의 죽은 친구는 자기 동료 간에 맞아 가지고 그 불만 가지고 떨어졌지요? 묵 가공하고 두부 만드는 회사인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전에 동료들과 다툼이 심하게 있었다고……

○최봉홍 위원 실지 내용은 안에서 자기 동기생, 동료한테 맞아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 지금 사회적인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 정서에 맞춰 가지고, 여태까지 공기업, 노동부 산하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다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공기업이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동부가 노력을 하시겠지만, 첫째 거기에 대한 문제는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공기업이라면 국민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공기업의 직원으로서의 사명감부터 먼저 주지시켜 주시고.

그다음, 이때까지 세계적으로 봐 가지고 IMF를 이겨 나가면서 공기업을 구조조정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한 나라들이 유럽의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좀 ILO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사람을 보내든지 해서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언론에 발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기업 협의를 할 때 그 사람들하고 ‘이런 사례도 있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언론에 왜 공개합니까, 그것을? 자기네들 스스로 공기업 감사 해 가지고 어디가 1등, 어디가 2등 그러면 방만하게, 1등 한 사람은 이

때까지 전부 한 것, 단체협약이 다 있고 한테 죽으란 말입니까? 그것은 차라리 조용한 가운데에서 안에 협의해 가지고 의논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다른 부처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최봉홍 위원 누군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뭉쳐집니다. 뭉쳐지면 나중에 촛불 들고 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이런 법안을, 노동법이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 이 법 자체도, 어제도 국정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90% 노동자는 혜택 하나도 못 봅니다. 지금 조직근로자 10%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최봉홍 위원 중소기업의 지원 뭐 하지만 인원으로 봐 가지고는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1900만 노동자들은 법의 혜택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가지고 이런 일을 처리할 때에는 전체 균형을 맞춰 가지고 노동정책의 중심 방향도 좀 변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지난번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새 이름 공모전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했습니다.

○최봉홍 위원 새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계약직이라는 이름이 뒤에 들어가 있고, 하여튼 이름이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좋고 조금 부정적인 면들이……

○최봉홍 위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특고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규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서로 달라서 그런데……

○최봉홍 위원 답이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어쨌건 그것은 고용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최봉홍 위원 고용 안정되었다고 보고, 저는 그래도……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이 유기계약직 근로조건보다도 못합니다. 저는 노예계약이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노동법상 보호받는 것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가지고 이 문제를 사용자개념, 근로자개념 확립과 같

이 좀 연구해 주시고, 아까 모두에 말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봉홍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1분만 더……

○**위원장대리 김성태**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최봉홍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했는데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하니까 금년에 차이가 더 벌어진 것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것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것을 동일임금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최봉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노동부가 정부 내에서 실제로 타 부처와 협조가 잘 안 되고 거의 왕따를 당하고 찬밥 신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조를 부정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스스로 할 일을 또 차단시킵니다. 주요업무는 거의 기재부의 산하기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보 유출 사건에서 보이듯이 내부 기강마저 아주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아주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고 거의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원인은 노동부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정상적인 노동부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전에 한명숙 위원님 질의에서 'MBC 파업 불법이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합법이다'라고 판결이 났고 '한국일보 직장폐쇄 아니다'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직장폐쇄다', '전교조는 노조 아니다', 법원에서는 '노조다',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하다' 이랬는데 법원에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계속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는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과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전교조는 한번 사

과하신 적 있지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김경협 위원** 전교조 문제는 사과하신 적 없던가요? 사과도 한번 하신 적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사과할……

○**김경협 위원** 일이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일이 아니어서 사과를 안 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법원에서 이렇게 다 노동부가 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는데 사과할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 최종심 판결이 안 났다? 대법원 판결까지 보시고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정부 입장에서 어쨌건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데……

○**김경협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노동부의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입니다.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노동부가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체불임금 대책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체불임금 규모가 1조 원이 넘어섰고 연간 피해 근로자가 30만에 이릅니다. 노동부가 이번에 체불임금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단히 미흡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잘못 잡았고 실효성이 실제로 얼마만큼 있을까 의문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10% 적용하겠다는데, 지금 퇴직자는 퇴직금 체불되면 지연이자가 몇 % 지급됩니까, 지연이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퇴직자는 20%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렇지요.

퇴직자는 지연이자가 20% 적용이 되는데 왜 재직자는 또 10%입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체불임금의 사유를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원인을. 대체로 체불임금에서 경영이 정말 어려워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20% 미만입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임금을 가지고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고의적인 체불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툼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선 노동부 행정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커집니다, 처리하기도 어려워지고요, 이렇게 다툼이 생기면.

이유가 중소기업들이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제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명세서를 매월 딱딱 제대로 저기 해서 임금과 함께 지불을 하면 나중에 이 체불임금을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없어질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임금명세서가 가지고 있는 유익한 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현장에서 특별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겠느냐, 아무리 법을 정하고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경협 위원** 이번에 제가 그래서 여기에 관련 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말씀하신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사실은 지불 능력 부족이 80%고, 그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아닙니다.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저희들이 그 통계를……

○**김경협 위원**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하는 게 20% 미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로 한 것은 사실은 다른 법하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다른 법하교의 형평성이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퇴직금 지연이자가 20%라고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20%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번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 제재,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보니까 배액배상 부가금제도를 이번에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법원 판결 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체불임금이 생기면 전부 다 법원에다 소송을 해 가지고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

르는 소송을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체불임금을 받습니까? 자꾸 이렇게 소송으로 유도하는 듯한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재판 끝나고 나서 체불임금 받아라’ 노동부가 할 일이 아니지요.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는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재판 끝나서 배액배상해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일단 말씀드린 이행강제금 제도 부분은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실제로 그게 근로자에 보상 효과가 실제적으로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우려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체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법 과정을 거치기 전에 소액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일단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부는 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법원보다는 양 측면에서 사업주가 그러한 동기가 생기지 않도록 일종의 경제적인 제재를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체불임금에 대해서 용자를 해 주는 제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용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먼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경협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고 보니까 용자도 방안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좋은데, 이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 부분, 연체이자가 좀 더 강화돼야 용자해서 실질적으로 5% 이자를 부담할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퇴직금 지연이자와 동일하게 맞춰야 하고 그다음에 임금에 관련해서 다툼의 소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게 이번에 체불임금 대책과 관련된, 제가 이미 제출해 왔던 법안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번에 어찌 됐든지 통과가 되도록 해서 실효적인 체불임금 대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를 만들 때 실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드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에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정부 입장들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훈 위원** 저는 90년부터, 제가 KDI에 근무할 때부터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22년 동안 노동부랑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저기에 계신 실국장님, 여기 산하단체 이사장님들, 지역의 청장님들, 제가 다 너무나 잘 아는 분이고 저는 노동부를,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정말 애정을 가지고 봤고 그다음에 누구한테나 ‘대단한 애국자들이고 능력 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환노위에서 활동하면서 점점 노동부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능한 면이 보이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도 무감각하게 느끼는 게 제가 애정을 가졌던 노동부에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제가 만약에 노동부면 저는 이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볼 것 같아요.

최 모 과장의 사건이 처음이냐, 그전에 없었느냐, 그다음에 유일한 거냐, 다른 데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것은 없는 거냐, 본부에서는 고용안정센터나 이런 지역본부 말고 산하단체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저는 오늘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게 처음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규모의 것은 최근에는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우리 지방관서에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산하단체는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산하단체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하고 직접 관련되는……

○**이종훈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번 저희 방에서 한 이틀 조사하면 알 수 있는 일이 왜 노동부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인지 제가 궁금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는데, 첫째 처음이냐? 아닙니다. 2012년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비리사건 있었

습니다.

이사장님, 있었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있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퇴직 직원하고, 그렇지요? 근무하는 직원하고 짬짜미가 돼서 정보 빼돌려서 그 정보 가지고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 자료를 입수해서 사업주한테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 축소신고 무마 이런 등으로 금품 받고 그중의 일부를 내부 직원한테 다시 리베이트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이종훈 위원** 그 사건하고 최 모 과장 사건하고 뭐가 틀립니까? 정보가 돈이라는 사건의 본질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요, 산하단체에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주영순 위원님이 노무법인하고의 관계 말씀드렸는데 제가 노무사들한테 제보를 받았습시다, 양심적인 노무사들한테, 세무사들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정보를 출력해 가지고, 출력을 할 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일을 다운받는 게 아니라 출력해서 밑의 출력자 이름만 짝 도려내서 받아 가지고 그중에 자신들의 주고객인 10~50인 사이만 가서 ‘우리가 뭐뭐 해 주겠다, 지원금 받아 주겠다’ 하고 수수료 받는 겁니다.

두 번째가요, 이게 진짜 황당한데 근로복지공단 지사 직원이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등급을 받은 다음에 2년 후에 재판정을 받는데요, 재판정 대상자 개인정보를 노무법인에 전달합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즉 다치신 분들이지요. 다치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2년이 됐는지 어떻게 알고 노무법인이 전화한대요, 잘 받게 해주겠다고. 이 사실은 분명히 유출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다음에 노무법인이 다 써 먹고 세무법인에 돌려 가지고 고용보험료 대납할 수 있는 사업장 정보 전달하는 것, 갑자기 세무법인에서 회사로 막 팩스 광고 오는 문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직 희망 장애인 개인정보가 기업에 막 돌아다니고, 물론 뜻은 이런 사람 뽑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일지 모르지만 개인정보가 중간에 아무 견제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증거를 제가 보여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 관료와 현재 직원의 내부 거래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최 모 과장도 제가 검찰 보도자료를 보니까 뒤에 보면 관련자가 있는데요, 관련자 중에 세 사람이 노동부 퇴직 관료입니다. 최 모 전 태백지청장, 허 모 전 부천지청장, 박 모 전 안양지청장이 노무법인을 대표하면서 최 모 과장과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또 의심스러운 것은 이 세 사람의 퇴직 관료들이 노무사 자격증을 받아서 노무법인을 만든 이후에 최 모 과장과만 거래를 했을 것이냐,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뿌리를 뽑으시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하단체를 포함해서 철저한 실태조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산하단체 이사장님들, 안전공단, 폴리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퇴직 관료들과 유착관계 없는지 그것 다 파악해서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노동부 관료들한테 주는 노무사 시험 특혜 이것 줄 이유 없습니다.

이것은 노동부를 위해서도 철저히 밝혀 주셔야 성실하게 일하고 깨끗하게 일하는 노동부 관료들의 명예가 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입에 담아서 안 되는 망언을 한 지청장 얘기를 했는데 ‘지역 언론에 난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런 사건이 언론에 났는데 그 큰 조직에서 아무도 모르고 관할인 중부지청장도 모르고 있다면, 누구한테도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이것 문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조금만 더 넣어 주세요.

제 오전 발언이 나간 다음에 오산상공회의소에서 그때 강의를 들었던 모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저희 방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언급한 그 말 그대로 자기가 들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 언급 안 하겠습니다.

제보도 받은 만큼 이게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제가 제일 처음에 안 것은 제보받고 안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보가 이렇게 와서 확인을 해 준 만큼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사항들 제가 아프게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해서 내부 실태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있는지, 또 내부 공모자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센터라든지 산하기관에 또 다른 가능성들이 있는지 특별점검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행한 이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건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가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이런 한두 가지의 도덕적 해이, 부정 이런 것들이 터지면 기관 전체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그 기관의 직원들 전체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위중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번에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래요, 장관 그 의지가 다음에 우리 위원회 때 확인될 수 있도록 꼭 명확한 조치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사회 보느라고 본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함께 10분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특혜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고용시장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또 정년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노동현장 나아가서 어떤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계속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의 어떤 편향된 태도와 입장 이런 것들이 노동현장이나 고용시장에서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대립과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합니다.

통상임금만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최종 대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잘못된 어떤 해석과 의도적으로 편향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잘못해 온 것에 대해서 대법 판례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국민 앞에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홍영표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만 해

주십시오. 없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홍영표 위원** 아니요, 됐어요.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니, 전에 사과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지침을 죽 지켜 왔는데 그 부분이 판례와 격차가 벌어질 때까지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보면 장관님께서 솔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모면하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주장한 것이 우선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이런 통상임금을 둘러싼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판례도 있었고, 대법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년 동안 이 논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지적이 있었고, 그것을 다 수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대법 판결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주장이 틀렸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대법 판결 자체가 우리의 헌법에 기초한 여러 가지 입법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난 고도의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의칙 원칙이라는 이런, 법률전문가들이 도대체 이런 용어 자체를 발견하는 게 대단한 대법원의 능력이라고 비아냥하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 판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발표한 것을 보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우선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 그리고 신의칙 적용으로 추가임금 적용을 불허한다는 것, 신의칙의 적용시기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고용노동부가 너무나 사용자 편에 서서 경총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해

서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 판결 자체가 지금 완전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 한쪽에 치우친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퇴직자들 같은 경우에 12월 1일 날 퇴직하는데 12월 말에 정기상여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으면 그것은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 ‘퇴직자에게 주지 않으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 물론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한쪽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기존에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거의 20년 동안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편을 들어 왔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신들이 통상임금의 어떤 기준, 정기성·고정성·일률성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 판결도 있었고 전문가 지적도 있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자들이 주문하는 대로 그것을 해석해 왔거든요. 그런데 또 대법 판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칙 문제는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쌍용자동차의 판례를 보면 경영 회피를 할 수 있는, 우선 경영 악화 이런 것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정리해고를 했다 이것이 법원의 판단 아닙니까? 그런 데서도 우리는 신의칙을 적용해야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신의칙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논란이 많은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이 아마 노동현장에서 이 해석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몇 가지 더…… 다음 번 보십시오.

사용자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되는 임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할 때는 내가 받

는 임금이 얼마라는 것을 약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일을 14일 동안 한 사람은, 15일 이상 채우지 못한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 임금을 계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에 보면 근무실적을 A, B, C로 평가해서 최하 C등급에 1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면 최소 100만 원만 보장되는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최하 수준을 10만 원으로 낮추면 그냥 한꺼번에 10만 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지침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1분만 더 주세요.

○홍영표 위원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지도지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지침을 어느 한편에 편향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요.

어쨌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침은 우리가 입법이 되기 전까지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고 그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이번에 나온 대법원의 전합 판결을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또 저희들이 노사단체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습니다. 수차례 자문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입법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우리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중간단계에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노사가 현장에서, 노동은 이익 다툼으로 소송하고 사용자는 편법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으니 저희들이 현장에서 공정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꾸 사용자 편이다, 어디 노동자 편이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혼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영표 위원 장관님, 경제단체나 또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노동단체에서 이것 동의하지 않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노사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노동계 어디를 하셨어요? 노동계 어디하고 했어요? 한국노총하고 했습니까, 민주노총하고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다 했습니다.

○홍영표 위원 다 해서 거기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의견을 들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홍영표 위원 정부는 의견을 듣는 척만 하고 다 경제계 쪽으로 해서 해석을 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다 의견을 듣고……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러면 왜 노동계에서는 이 지도지침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은 전합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서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영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편파적으로 했다는 것이 노동계 의견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노동계 의견만 반영해서도 안 되겠지요.

○홍영표 위원 그런데 무슨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사용계의 의견만 반영을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위원님.

○홍영표 위원 그리고 중간단계의 지도지침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지금 지적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홍영표 위원** 제가 지금 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질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판결하고 저희 지침이 다르지 않다는 대법원에서의 의견도 있었어요. 말씀하신 재직자 요건만 해도 그다음에 고법 판결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부산고법에서?

○**위원장대리 김성태** 자,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자꾸 저희가 어느 편을 들어서 지도지침을 만들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장관님만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대리 김성태**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지도지침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어쨌건 앞으로 이 부분에……

○**홍영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입법을 빨리하는 것이 아마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맞습니다. 통상임금 논란은 입법행위가 마무리되어야만이 이런 사회적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지침에 대해서 민주당 홍영표 위원님께 장관께서 각별하게 이해를 구하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세요.

○**홍영표 위원** 설명 안 해도 다 알아.

○**위원장대리 김성태**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런 것 같아요.

○**홍영표 위원** 전혀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음은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주영순 위원님 조금 하시겠습니까?

○**朱永順 委員** 저 한 번도 안 했지요.

○**위원장대리 김성태** 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주영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朱永順 委員** 장관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상임위원회 또 국정감사에서 계속 노무법인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솔로몬 저축은행의 여러 가지 부실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현재 행정처분 절차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시다.

○**朱永順 委員** 그래요? 반드시 그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시고.

노무사 자격증을 어떤 요건을 가진 사람한테 줍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노무사 자격증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朱永順 委員** 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나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입니다.

노무사 자격은 기본적으로 공인노무사 시험을 통과해야, 통과한 뒤에 소정의 연수 등을 받아야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러면 노동부에 근무한 사람들이, 서기관급 이상…… 그러면 세무사들은 지금 국세청의 서기관급 이상은 자동적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주잖아요?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예.

○**朱永順 委員** 노무사도 그렇게 합니까?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노무사를 자동적으로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에게는 일정한……

○**朱永順 委員** 가점을 준다?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예, 1차 시험이라든지 부분적인 면제만 해 주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정의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朱永順 委員** 그러면 전국에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업 노무사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왜 제가 이런……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 85년 이후

에 총 자격취득자는 3400여 명입니다. 다만 이분들 중에 다수는 실제 개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통계로 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노무사들을 통해서 다 기업하고 어떤 이권관계로 밀착되고 공무원들하고 밀착되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불리 다루시면요, 지금 아까 그 최 모 과장이 2개의 노무법인을 상대해 가지고 13만 몇천 건을 정보를 유출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노무법인들이 자기만 그것을 해먹은 것이 아니라 동료 노무법인들한테 그 정보 다 쥐 가지고 다른 데서도 지금 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감사원에 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朱永順 委員** 그렇게 안 하면 또 터져요, 제이 제삼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일단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깐 좀 지켜봐 주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로 조치들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도 범정부적으로 이런 정보 보안 관련해서 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朱永順 委員** 내부적으로도 직원들한테도 철저히 교육해서 노무법인들하고 이렇게 밀착되어 가지고 이런 부조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엄단하도록 그렇게 지시령을 내리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지난달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고용부의 상설감독팀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고용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이 위험 사업장으로 지정을 해서 상설감독팀까지 해서 주말도

없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다시 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朱永順 委員** 고용부의 상설감독팀이 12월 초부터 당진사업장에서 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데, 휴일인 사고 당일에는 감독팀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이 파악한 위험작업, 위험 공정에 대해서는 휴일도, 주말에도 그 감독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고가 난 그 슬래그, 뒤로 빠진 부분, 그 노무에서 빠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험한 장소라고 파악을 안 해서 주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朱永順 委員** 그리고 고용부 상설감독팀도 휴일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의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업무일지를 써 놓고 대비를 안 했습니다.

사후에, 뒤늦게야 휴일 감독에 나선 것인데, 그렇게 한 사실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일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朱永順 委員** 일지에, 분명히 5일, 6일자 일지에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 후에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이 당초에 1200억 원의 안전 관련 예산을 5000억으로 대폭 증액을 하고 안전관리요원도 15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늦게나마 그룹 차원에서 현대제철이 이렇게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기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사고가 현대제철만 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업도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것 충분히 인지시키고 또 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사안의 위중함을 알고 저도 계속 그쪽의 최고 CEO가 나와서 특단의 대책들을 하기를 요구했고 아마 거기에 부응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유사 기업들도 아마 상당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마무리하십시오.

○朱永順 委員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나 고용부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안전관리 문제만을 지적을 하고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소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가 상설감독팀을 운영하면서 모든 근로자를 감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근로자 한 명 한 명 맨투맨 식으로 관리요원을 따라붙여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최전선에 있는 근로자 스스로가 철저한 안전의식을 갖고 그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서 언제든지 사측이나 관리자에게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동의합니다.

○朱永順 委員 고용부가 산재에 대해서 사후감독 위주에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전안전교육과 재해방지 노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추진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공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하고, 또 현장은 특별히 우리 안전보건공단과 같이 협업하고, 민간인들의 힘을 좀 빌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장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저희 제한된 감독 인력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사고가 터지면 이러지 말고 사전 예방하는 데 예산을……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사전예방적 조치들을 강구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투입해서 방지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이지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 장관님, 최근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금융권의 구조조정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권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 중에 최근에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외환은행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의 카드부분을 분사해서 독립사를 출범시킨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향후에 하나SK카드와 통합이 예상되고 이 가운데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입니다—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향후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도 쉽게 분사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카드 분사 결정이 아직 나오기도 전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서 그래서 구성원간에 갈등이 지금 굉장히 촉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노동부가 빨리 인지해서 이것이 본격화돼서 쏘아 터지기 전에, 너무 커지기 전에 사전에 이러한 노사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 사측은 조합원들이 하는 노조 대의원대회의 참석을 두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노조행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합원들이 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고 그것은 자유행위입니다만 이런 것을 방해하는가 하면, 또 사측의 일방적인 카드 분사 결정 후에 직원들에게 노조와 협의 없는 전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적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면 정리해고 대상이라고 엄포 내지는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적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조합원은 본보기로 보복 발령을 내는 등 단협 위반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가,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지금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심각하게 노골화되

면 이것은 굉장히 노사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고, 그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크게 끓으면 또 다른 형태의 노사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은행에서 진행되고 있는 카드 분사에 따른 노사갈등, 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와 감독을 진행해서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금융권 구조조정,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노사갈등이라든지 고용불안정 이런 것들을 좀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하여튼 각별히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게 노골화돼…… 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방을 하고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금융권의 구조조정 문제가 상당히 건강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입니다.

장관님, 보통 1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지청에서 접수되는 성희롱 사건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한 이백삼사십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조치가 된 건수를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혹시 장관님 대신에 차관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정조치가 되는 것은 한 30여 건이니까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희롱 피해 접수 건수도 낮고, 그리고 피해가 구제되는 건수는 아주 턱없이 낮습니다.

최근 제가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과 또 단체들과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해도 고용노동부에는 신고하

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것이 지금 통용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전문성도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소송하는 게 낫지 고용노동부에는 신고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초대 여성부장관을 했습니다. 여성부장관을 할 때 그 안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두어서 여성부 내에 사법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성 전문가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런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 문제를 아주 전문적으로 다룬 일이 있어서 그때 상당한 성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라고 기억되는데,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가 되면서 이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인권위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를 인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부나 인권위는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많고 전문성이 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아마 보니까 근로감독관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마무리하십시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아무리 그분이 잘하려고 해도 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를 가면 ‘내가 60건이나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 하냐? 기다려라, 무조건 기다려라’ 이렇게도 하고,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여성단체로 가 봐라’ 이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는 상당히 근로감독관제의, 성희롱 사건의 전담 근로감독관제도의 부재라든지 또 과부하라든지 이런 부담스러운 구조 때문에 참 고용노동부는 이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차관님?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우선 같은 여성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갖지

않았던 자신에 대해서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조치 상황을 봐서는 지금 작년 3년 동안, 11년부터 13년까지 824건이 신고가 됐는데 실제 조치된 것을 보면 그렇게 낮은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11%, 기소가 약 6%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독관의 수많은 업무 중의 한 분야를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희롱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를 의식해서 꼭 감독관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성희롱에 대해서는 저희 고용부의 감독관……

○위원장대리 김성태 차관님,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다른 민간조직에 위탁해서라도 대표전화로 둔다든지 해서 신고를 용이롭게 할 수 있고 처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좀 전형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명숙 위원 아니, 제가 이것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 방안 만들어서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 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한명숙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고용노동부가 전문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두 사람이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부분과 아까 과부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만약 이것을 해결한다면 고용노동부만이 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되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인권위의 전문성, 여성부의 전문성을 함께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서 직장 내의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를 좀 제대로 다루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고

용노동부가 신뢰가 높아지고 고용노동부의 업무도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외부의 평가도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대안을 내니까 이런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요……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를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희 정치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보충질의 모두 마쳤습니다.

○홍영표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오늘 우리 고용노동부 세종시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올라오니깐 몇 시간 걸렸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오늘 아침에 오지는 않았는데 올라오는 데는 한 2시간 걸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내려가는 데는 또 몇 시간 걸려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마찬가지로 2시간……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관님은 안 내려갈 거잖아요?

(웃음소리)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치기 전에 좀 몇 가지……

오늘 보건복지위에서 말이에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라도 신안의 지금 현재 염전노예 문제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지금 질문이 앞에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런데 이 염전노예 문제가 실태조사를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이게 아마 장애인 대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게 청소년하고 장애인의 노동 착취가 염전노예 사건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

도 고용노동부의 고유 업무인데 제가 볼 때는 도
서 벽지 점뿐만 아니라 산간 이쪽에도 지금 흔히
말하는 노동 착취된 노예형 그런 작업이 이루어
지는 곳이 많아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선술집에서 소주 한 잔
하다 보면 아가씨들도 어디 섬에 어디 팔려 간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도 어디 섬에 그냥 실려서 팔
려 간다 이게 허다하게 들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염전노예 문제의 노동 착취 실태,
특히 청소년 장애인들의 이런 노동 착취 실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현안 관련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지금 경찰하고 저희
가 합동조사 중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광범위
하게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봐야 되
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철수 의원이 장애인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
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을 보건복지위에
서 다루고 또 장관하고 주고받고 또 받은 답변
내용이 기사로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좀 번지수
를 제대로 못 찾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협업하세요, 협업. 협업하는 거예요, 이
것?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협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복지부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습
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이것 손 놓고 있
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 과제로 하나를 설정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것을 위해서는 임금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강
화를 할 것이라는 그런 발표를 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지금 현재 통상임금이나
앞으로 또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근로시간 단
축이나 이런, 또 작년 4월 달에 한 정년연장 후
속대책 이런 여러 가지 현재 고용노동시장의 전

반에 산적한 현안들이 국회에서 바로 입법 활동
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잘 알
고 계시지요,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 간
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또 그것을 참고해서
국회가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부가 뒷받침되
고 이르면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렇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노사정 지금 현재 사회적
논의가 사실상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어려울 것
같은데 장관은 어떻게 예측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을 노사정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요. 그 대화의 틀은 일단 정부의 공식 대화 채널
로 노사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이용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아니, 그러니까 노사정 기
능을 이렇게 살려서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이게 작년부터 한 얘기예요. 그런
데 되려 그나마 한국노총마저도 노사정 뛰쳐나가
고 이것을 노사정 다시 복원될 기미가 지금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구체적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는 지금 복원을 위
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
접촉 중이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다 하려고 합시다마는 어
쨌건 다시 한번 노동계나 경영계나 이 중차대한
사안들이 전부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화에 복원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국회와 정부 그리고 노동
계와 경영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상생의 해
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특히 고용노동부가 능동
적으로 소임을 다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
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협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태** 뭐 많이 했는데……
추가질의 더 하실 거예요? 더 하실래요?
- 한명숙 위원** 추가질의 아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대리 김성태** 그래요?
- 김경협 위원** 아까 주신다고 했어요.
- 朱永順 委員** 그냥 마치지요.
- 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장석에서 일어나며)
그러면 오셔서 사회 보고 하세요.
- 홍영표 위원** 먼저 하고 나와요.
- 朱永順 委員** 간사님 마칩시다. 저도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질의할 것이 있는데……
(김성태 간사,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홍영표** 5분씩만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 朱永順 委員** 아니, 나는 안 하렵니다. 시간이……
- 위원장대리 홍영표** 5분씩만……
김경협 위원님이 얘기하세요.
- 김성태 위원** 안 한다는 사람을 왜 자꾸……
- 위원장대리 홍영표** 아니, 한다고 그랬어요.
- 김경협 위원** 5분만 줍니까?
- 위원장대리 홍영표** 예.
-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아까 통상임금 지침 만들 때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 노총에 물어봤더니 오시기는 했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노총의 의견이 한국노총이 ‘재직자 조항하고 신의칙 원칙 이것을 넣으면 사용자들이 악용할 우려가 크고 따라서 이게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구요.
(홍영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주노총에서는 노동부 관계자가 한 10분 정도 와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대요,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이 자리에서도 역시 민주노총도 ‘재직자 조항 그다음에 신의칙 문제 조항 이것 들어가면 사용자들이 악용할 것이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 ‘안 된다고 한 것 같다’ 제대로 해서 넣어 놓으셨어요, 지침에다가.
-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니, 경영계는 또 반대 얘기를 하고……
- 김경협 위원** 지침에다는 제대로 넣어 놓으시

고.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이제 그만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적인 근로 대가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켜서 노동자들에게 이제 적정 수준의 임금을, 기본 임금을 보장을 하고 임금 체계는 복잡한 임금 체계는 단순화시켜라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에게도 장시간 근로하고 저생산성, 낮은 노동 관행을 이제 바꿔라 이런 취지인데 노동부의 이번의 통상임금 지침은 이것하고 정반대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계속 고착시키겠다’ 이런 지침이에요.

노동부가 이 통상임금 지침을 발표하자마자 양대 노총부터 시작해서 바로 정부와의 대화 단절을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 선언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언론하고 국민들은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총에서는 지금 현재 산하조직에다가 이것 행정소송 제기하고 그리고 전부 다 노동조합들에다가 노동부 지침대로가 아니라 소송해서 통상임금 받아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그렇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것은 대법원 전합체의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점점 더 소송을 부추기고 있어요, 소송을. 노동부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가 정부가 왜 지도 지침을 만들었겠습니까?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사가 대화로 임금 체계 개편을……

○**김경협 위원** 그 취지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양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서 실제로 한번 현장 파악하시고요. 이 노동계 의견 좀 제대로 들으시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침 다시 검토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지침은 저희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 편향된 부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전합 판결의 취지를……

○**김경협 위원**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질의로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니까 노동부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김경협 위원** 노동부가 기업 노무과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나 의미를 이렇게 왜곡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이번의 정보 유출 사건, 이게 지금 조희가 2008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계속 됐어요, 정보 유출이.

그런데 그전에 이미 막을 기회가 네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노동부에서 다 무시를 했군요.

12년 7월 국민권익위로부터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과장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13년 4월 경찰로부터 부정수급 수사 관련 자료제공 요청이 있었어요. 최 과장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13년 9월 경찰로부터 최 과장을 특정해서 수사 관련 자료제공 요청이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13년 9월 4일간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종합감사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네 차례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한 것입니다.

감사는 대단히 형식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통보가 보면, 여타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사기관이나 통보가 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하게 돼 있지요? 특정감사 하게 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사 요청은 것들은 다 답변을 하고 자료를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그 각 시점에서……

○**김경협 위원** 그런데 지금 네 차례의, 왜 지금 이게 전부 다 다른 기관들로부터 이미 다 통보가 왔는데 왜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김경협 위원** 이것은 지금 5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걱정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협 위원** 감사 규정에 의하면 경찰로부터 범죄 통보, 자료제출 요구받은 경우에 지청장, 국·실장 등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협 위원**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되도록 지금 그렇게 놔뒀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이후로는 자료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압수수색이든지 이런 것 진행됐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협 위원** 아까도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건 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건 외에 일상적으로 지금 현재 노무법인과 노동부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결탁,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정보 유출 전부 다 거의 다 지금 일상화돼 있어요. 알려져 있습니다, 일상화돼 있다고.

정말 이것 제대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조사하시고, 제대로 조사하시고 제대로 대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한명숙 위원** 저는 아까 하다가 조금 못 한 게 있어서……

성희룡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최근 르노자동차 중앙연구소에서 일어난 성희룡 사건이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해서 해결을 했다가 그 이후에 2차 3차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자행되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돼서 저희들이 여성단체와 함께 제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에서 이것을 많이 봤고 관심을 갖게 돼서 노동부가 지금 경기지청이 수사로 이

것을 전환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의 문제는 사실상 성희롱 문제로 발단이 됐지만 성희롱 문제만이 아니라 요번에 수사하거나 감독을 하실 때 전반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여성가족부와 인권위와 협력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정부 공동으로 대처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과 그다음에 르노삼성자동차의 성희롱 문제를 이미 노동부가 개입을 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근로조건까지 특별감독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법 위반 사항들은 확인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할 것입니다마는 특별감독 관련해서는 조사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관련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정책적 효과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다른 데서도, 인권위나 여성부에서도 환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다 하셨나요?

○**한명숙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고맙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홍영표 위원** 홍영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가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일주일에 최장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일단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요, 연장근로……

○**홍영표 위원** 초과근로 얼마 할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12시간……

○**홍영표 위원** 52시간이 지금 법정근로시간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홍영표 위원**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주말·휴일 근로는 거기에서 제외해서 68시간, 심지어는 그 이상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60시간으로 줄이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단계적으로, 원래는 52시간으로 줄여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 산업이나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 저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단계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 예, 그 문제는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의 해석을 잘못해서 굉장히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해 왔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산업계의 필요한 국가경쟁력이든 그런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홍영표 위원** 일주일에 법정시간이 초과근로 포함해서 52시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행정해석을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홍영표 위원** 잘됐습니까? 잘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잘되고 뭘 떠나서……

○**홍영표 위원** 아니, 잘되고 뭘 떠나서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기업 현실……

○**홍영표 위원** 그럼 법과 원칙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법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는 아직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홍영표 위원** 아니, 판례가 아니라, 왜 또 대법원 판례로 가세요?

아니, 근로기준법에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면서요, 초과근로 포함해서?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홍영표 위원** 법정근로 52시간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냥 꺾테기로 해 놓으면 됩니까?

제 말씀은 고용노동부가 그런 건 인정을 하시라고요. 잘못된 행정해석을 해 온 것 아닙니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산업계 현실이 불가피해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법을 잘못 해석해 왔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연장근로하고 휴일근로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현재 근로기준법상에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판례하고 학설도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장관님, 그런 게 말장난입니다.

일주일이 대한민국은 며칠입니까?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

○홍영표 위원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그런……

○홍영표 위원 일주일이 5일입니까?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는 일주일을 5일로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니, 일주일은 7일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요.

○홍영표 위원 예, 7일이지요. 그럼 7일 동안에, 주당 몇 시간 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근로기준법에? 그것을 편의주의적으로 토요일·일요일을 빼고, 주말을 빼고 그렇게 해석해 온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입법을 빨리 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

○홍영표 위원 그런데 고용노동부 뜻대로 안 될 겁니다, 그게.

아니, 기다리시지 그래요, 대법 판결을? 왜 입법을 또 빨리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왜 지금 와서 국회에다가 그 공을 떠넘기시려고 해요? 대법 판결 기다리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가 입법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제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홍영표 위원 아니, 통상임금은 저희들이 그것

을 입법을 해야 된단니까 대법 판결이 있다고 시간 질질 끌어 가지고 대법 판결 나왔지 않습니까, 원하는 판결?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2개의 사안이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홍영표 위원 뭐가 달라요? 아니, 다 대법 판결 때까지 기다리세요. 대법 판결까지 기다리시면 되지 근로시간 단축은 왜 서둘러서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 뜻대로 안 될 겁니다, 그게. 그렇게 편의주의적으로 국회 입법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통상임금도 그렇고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고. 저는요,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타결되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대립이나 갈등도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는 이해당사자들이 대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편의주의적으로 행정을 해석하고 편파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입만 열면 법과 원칙 따지고……

근로시간 단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 지킨 겁니까, 정부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그래서……

○홍영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정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행정해석은 그렇더라도……

○홍영표 위원 정부가 인정을 하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자꾸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식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현실과 괴리가 있다거나 좀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하는데……

○홍영표 위원 인정을 하면서 어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잘못됐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홍영표 위원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 초과근로 12시간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래서 그 행정해석이……

○**홍영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행정해석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공약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홍영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다르다 이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취지를 살려서…… 법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거겠습니까, 실제로? 법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 현장과 근로자들 위해서 근로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홍영표 위원** 아니, 우리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을 언제 했습니까? 2003년도부터 시행하지 않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홍영표 위원** 아니,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주 5일, 대한민국은 주 5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7일로 정상화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김경협 위원** 전 세계가 주 7일입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1번, 2번 해 가지고, 어떤 변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니,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7일로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법적인 정의라든가 그것을 떠나서……

○**홍영표 위원** 장관님은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정부에서 ‘주·휴일을 연장근로에 포함하자’ 이게 국정과제 아니겠습니까? 국정과제라는 것은……

○**홍영표 위원** 아니, 전 세계 어디에서 법으로, 근로기준법에 ‘주당 40시간, 초과근로 12시간’ 해 놓고 ‘연장근로를 거기서 뺀다’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저희들 기본적인 원칙은 52시간으로 가는데……

○**홍영표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100시간이나 되는 OECD 최대의, 최장 근로시간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를 합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 식의 발상을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아니, 그렇기 때문에 ‘주·휴일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자’ 이 과제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영표 위원** 제가 이것을 입법을 생각하다가도,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왜냐? 2003년도부터 이미 주 40시간, 초과근로 12시간을 법으로 해 놓고 지금 와서 어떤 형태로든지 60시간으로 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니……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법은 원래 52시간인데 그 법을 현장에 접목하기까지 기업의 현실을 좀 고려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규모에 따른 단계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혼자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미 1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다른데 그것을 왜…… 아니, 저는 법대로 하자고요, 법대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위원님, 당장에 근로시간이 그렇게 팍 줄어서 지속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그게 현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홍영표 위원** 아니, 현실을 생각했으면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해 왔어야지요. 지금 와서…… 아니, 우리는 법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60시간으로, 60시간과 8시간은 더 초과근로할 수 있게 해 주자? 저는 그것을 사실상 후퇴로 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지금 현재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 가지고……

○**홍영표 위원** 왜 10년 전에 만들어진 법, 후퇴하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기업하고 경영계하고 노동계에서 내는 목소리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우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자는 게 국정 목표고, 그 목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입법을 하려다 보니까 바로 52시간으

로 가는 것은 기업에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영세 기업도 많은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위원장 신계륜** 자, 이제……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단계적으로 하자는 그러한 안입니다.

○**홍영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일응 저도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현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나서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그렇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영표 위원** 고용노동부는 완전무결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었고 국회가 잘못된 겁니까? 국회가 법을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게 만드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국회에다가 공을 떠넘기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인정을 하시라 이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공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의 입법안을……

○**홍영표 위원** 정부가 인정을 하라고요. ‘법과 원칙을 제대로 못 지켜 왔다, 현실 때문에’, 인정을 하시라고요.

○**위원장 신계륜** 질의와 응답을 이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그 인정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돼요.

.....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표 간사님이 안 된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하시렵니까?

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장하나 위원** 5분으로 알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반드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장하나 위원이고요.

방하남 장관님께서, 저도 홍영표 간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잘 들었는데, 뭐랄까요? 토론이 의미 있는 토론이 되려면,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의 취지를 살릴 수 없도록 짜여진 답만 하시는 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망연자실했습니다.

지난 장관님부터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너무 즐겨 쓰시기에, 하지만 분명히 아까 표현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당장 기업 현실이, 특히 영세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이 있지만 또 현실도 고려해 가면서 시행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럴 때는 현실도 많이 고려하시면서 예컨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 불법 의견 주실 때라든가는 한 치의 오차도, 양보나 절충도 없는 그런 입장 고수하시다가 또 사측의 입장,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을 고려할 때는 법과 원칙에도 불구하고 많이 그런 현실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장관님이 그간에 답변하시거나 또 노동부에서 정책을 운영하실 때 말과 장관님의 그런 법과 원칙이라는 답변과 정책이 매번 일치하지 않아서 홍영표 간사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의문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무조건 아니라고, ‘법과 원칙에 어긋난 적 없다’ 해 버리면 아예 질문 답변을 왜 하겠습니까? 여기가 책임 소재를 굳이 묻고자, 장관님의 지금까지 언행에 어떤 흠결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솔하게 일단은 대화와 토론이 바탕이 되어야 의회에서의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니다’, 너무 ‘지금까지 잘못된 바 없다’ 이렇게 강고하게 말씀하시면 어찌 저희도 질의를 하겠습니까, 특히 야당 입장에서. 그 점은 제 사건이지만 그래도 장관님이 제 얘기도 들으시고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십시오. 이거 너무 사적인 얘기라……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취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시지요? 감사하고요.

유성기업 얘기를 갑자기 다시 꺼내게 된 이유는, 저도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공교롭게도 장관님과 이렇게 질의응답 하는 동시간대에 지금 유성기업이 2011년의 1, 2, 3차 징계안 징계 절차를 밟습니다, 사내에서요. 그런데 그중에 2차 해고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오늘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고 부당해고였다고 인정을 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마침.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노동부에서도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수사를 했고,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기소처분이 됐고요. 그런데 이전에 별도로 진행되던 이런 부당해고를 포함한 징

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는 또 부당해고가 맞다, 부당한 징계였다 이런 것들이 오늘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동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지정하기보다…… 노동 분야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아까 장관님이 우리는 우리 식의 수사결과를 냈지만 재판부에서는 뭐 어떤 증거라든가 아까 사법부의 어떤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들었는데요. 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피해를 안 보면 좋겠지만 서로 존중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 하는 순간도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있고요. 또 아까 같은 사법부 내에서도 재판부는 또 다른 취지의 결과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노동부는 ‘우리 소임 다했다’로 책임을 다 면하기는 어려운 시점 같아요. 특히 부당노동행위와 작년, 제작년에 문제 제기가 됐던 회사의 노조 탄압, 특히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후에 제2노조를 만들 때 회사가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 두 노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차별하면서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뺏어온 이런 일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차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저희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 엄정한 수사를 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바르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것들이 바르게 되는 방향으로 수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들은 저희들이 한 대로 검찰에서 받아 주고 어떤 건들은 받아 줄 것 같은데 안 받아 주고, 뭐 이런 여러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건 저희들이 그런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하나 위원 예, 저는 일선에 계신 우리 노동부 직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수사했는데 그 수사 결과가 물거품이 됐을 때에는 수장으로서는 그런 직원들의 노력이 허사가 안 되도록 지켜 주실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창조건설팅이 관련된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 파괴 시나리오, 저희 청문회 때 많이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 무더기 불기소가 됐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보고도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이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를 드리고요.

저는 근로감독관, 지금 아직도 TO를 다 못 채우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예산을 마련하는 측면이라든가 국회에서 해 드릴 수 있는 지원들을 열심히 할 테니 좀 더 우리 노동부가 이런 건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함께 해 봤으면 하는 적극적 방안들을, 어떤 조처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예,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하나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쌍용차 해고자가 150명이 넘게 1심과 달리 2심에서 해고가 무효가 된 것은 우리 노동부로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내에서도 그것이 무효…… 해고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노동자 편에 서서 이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부서가 유일하게 노동부인데 150명이 넘는 해고자가, 지금까지 전부 해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점에서 반성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관해서 아마 지난 16대 국회에서 제가 민주당의 환노위 간사로 있으면서 주 5일 근무, 40시간 근로제도를 법제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노동부에서 일했던 책임자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양대 노총, 정부, 다른 정부에서 반대한 산자부 사람들 다 찾아 가면서 협의와 합의를 이끌어 낸 그런 훌륭한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동부가 그런 면에서 조금 선진적으로 가고 조금 진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주영순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환경부로부터 AI 관련 현안보고 등을 듣고 법률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 경 협	김 상 민	김 성 태	서 용 교
신 계 룬	은 수 미	이 완 영	이 종 훈
장 하 나	주 영 순	최 봉 홍	한 명 숙
한 정 애	홍 영 표		

○청가 위원(1인)

심 상 정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한 공 식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 차 기 획 조 정 실 장	관 관	방 정 심 이 권 임 나 황	하 현 경 재 영 서 영 보	남 옥 흥 순 정 돈 국
-----------------	-----	-----------------	-----------------	---------------

인력수급정책국장	신 기 창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이 수 영
근로개선정책관	임 무 송
노사협력정책관	박 화 진
공공노사정책관	송 문 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 종 길
정 책 기 획 관	김 재 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 영 기
상 임 위 원	박 길 상
중앙노동위원장	박 준 성
최저임금위원장	이 재 갑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송 영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백 헌 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 성 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유 길 상
한국고용정보원장	장 의 성
한국잡월드이사장	김 재 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문 형 남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 종 구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 기 권
이 사 장	김 윤 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이 기 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김 윤 배
이 사 장	이 진 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보고사항】

○의안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9 박민수·이낙연·배기운·김윤덕·정청래·이춘석·전순옥·심재권·이재오·황주홍·서영교·김재운·김우남·변재일·민병두·김경협·조경태·박남춘·장하나·은수미·전정희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9 박민수·배기운·김윤덕·정청래·서영교·배재정·변재일·김경협·박남춘·전정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0일 회부됨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이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3. 12. 20 이윤석·강동원·김관영·김성곤·박기춘·박주선·신장용·이석현·전정희·주승용·추미애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

(2013. 12. 20 오병윤·윤후덕·윤관석·김미희·김선동·이상규·박남춘·전정희·김재연·한정애·이석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3일 회부됨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9 신계륜·김태년·김경협·김동철·김성주·남인순·김선동·이학영·김광진·최동익·윤관석·진성준·이완영·전순옥·박남춘·김성곤·정진후·김상희·장하나·김재윤·이상직·한정애·오영식·이이재·최규성·배기운·이종걸·김춘진·윤후덕·김상민 의원 발의)

12월 24일 회부됨

기업살인처벌법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2. 24 김선동·최규성·배기운·김영록·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김승남 의원 발의)

12월 26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3. 12. 26 오제세·서영교·박남춘·전순옥·전정희·이낙연·김미희·윤관석·배기운·안철수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2. 26 김선동·황주홍·김영록·최규성·배기운·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26 김미희·남인순·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상규·김성주·최민희·이목희·이석기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7일 회부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12. 27 정부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3. 12. 27 김선동·황주홍·김영록·최규성·배기운·박민수·오병윤·김재연·이상규·김미희·이석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0일 회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3. 12. 30 김기준·배기운·박남춘·전순옥·안규백·김성곤·강동원·진성준·민병두·이낙연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12. 30 정부 제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2013. 12. 30 민현주·김정록·김상민·이만우·이종훈·김동완·권은희·강은희·박인숙·홍지만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31일 회부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3. 12. 31 최봉홍·박창식·강석훈·신성범·윤명희·하태경·주영순·주호영·김상민·정우택·박성호·정갑윤·장윤석·김희국·김정록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3. 12. 31 강동원·배기운·백재현·이미경·유성엽·유승희·김제남·심상정·장하나·강기정·추미애 의원 발의)

이상 2건 2014년 1월 2일 회부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3. 12. 31 김상희·서영교·은수미·이완영·남인순·심상정·장하나·이미경·김재윤·배기운·전정희 의원 발의)

2014년 1월 3일 회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4. 1. 2 최동익·장하나·정호준·윤관석·김성곤·이낙연·배기운·김재윤·서영교·배재정·최민희·박지원·안홍준·인재근·박남춘 의원 발의)

1월 4일 회부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4. 1. 8 조경태·김제남·황주홍·전순옥·배재정·박민수·강동원·박인숙·배기운·추미애 의원 발의)

1월 9일 회부됨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4. 1. 10 배기운·김관영·박주선·김영록·박민수·김기준·양승조·김성주·이미경·이종걸·김승남 의원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2014. 1. 10 장하나·김영환·김우남·김재윤·박남춘·박민수·배기운·부좌현·서영교·유성엽·윤관석·은수미·이낙연·이학영·임수경·전순옥·정진후·정청래·최원식·한명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3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 발의)

(2014. 1. 14 김용익·원혜영·도종환·이춘석·오제세·이학영·홍익표·이언주·김기준·인재근·양승조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4. 1. 14 한정애·김경협·김관영·김상희·김재윤·도종환·배재정·심상정·윤관석·은수미·인재근·임수경·장하나·전순옥·최민희·최원식·추미애·한명숙·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5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

(2014. 1. 16 김광진·정호준·배기운·강동원·정진후·남인순·배재정·박홍근·이학영·김승남·변재일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 발의)

(2014. 1. 16 김경협·최원식·은수미·진성준·김용익·김진표·원혜영·한정애·추미애·배기운·이찬열·장하나·최민희·한명숙·진선미·임수경·전순옥·김재윤·박남춘·안규백·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7일 회부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0 배기운·김관영·박주선·김영록·박민수·김기준·양승조·이종걸·김승남·강기정 의원 발의)

1월 21일 회부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1 장하나·배재정·강기정·김경협·전순옥·박남춘·최민희·진선미·정진후·유성엽·이미경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1 장하나·배재정·강기정·김경협·전순옥·박남춘·최민희·진선미·정진후·유성엽·이미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2일 회부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3 장하나·김경협·김민기·김상희·박남춘·박수현·서기호·우원식·은수미·이미경·정성호·정진후·최동익·한명숙·심상정 의원 발의)

1월 24일 회부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 24 최민희·배기운·서영교·김성곤·김승남·김광진·윤관석·임수경·진성준·안민석 의원 발의)

1월 27일 회부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8 김성태·최봉홍·주영순·서용교·권성동·김상민·김기선·김용태·김무성·이종훈 의원 발의)

1월 29일 회부됨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 발의)

(2014. 1. 29 이언주·김기준·전순옥·부좌현·장하나·최원식·김용익·은수미·양승조·한정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4. 2. 4 이언주·장하나·김용익·전순옥·양승조·한정애·최원식·부좌현·은수미·김기준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4. 2. 4 이언주·장하나·김용익·전순옥·양승조·한정애·최원식·부좌현·은수미·김기준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5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4. 2. 6 이명수 · 김을동 · 이노근 · 함진규 · 김태원 · 박상은 · 안효대 · 이연주 · 문정림 · 이운룡 · 정희수 의원 발의)

2월 7일 회부됨

환경책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4. 2. 7 한정애 · 김관영 · 부좌현 · 신기남 · 심상정 · 은수미 · 장하나 · 조정식 · 최민희 · 한명숙 · 김경협 · 홍영표 의원 발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4. 2. 7 홍영표 · 심상정 · 한명숙 · 최원식 · 강동원 · 이윤석 · 은수미 · 이목희 · 이낙연 · 이용섭 의원 발의)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4. 2. 7 이완영 · 강길부 · 강석호 · 권성동 · 김한표 · 김현숙 · 류지영 · 박성호 · 윤재옥 · 이노근 · 이우현 · 이채익 · 주호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0일 회부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4. 2. 10 김경협 · 박명재 · 김상희 · 한명숙 · 장하나 · 이미경 · 변재일 · 이찬열 · 김춘진 · 홍영표 · 심상정 의원 발의)

2월 1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2013. 12. 30 민현주 · 김정록 · 김상민 · 이만우 · 이종훈 · 김동완 · 권은희 · 강은희 · 박인숙 · 홍지만 의원 발의)

12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